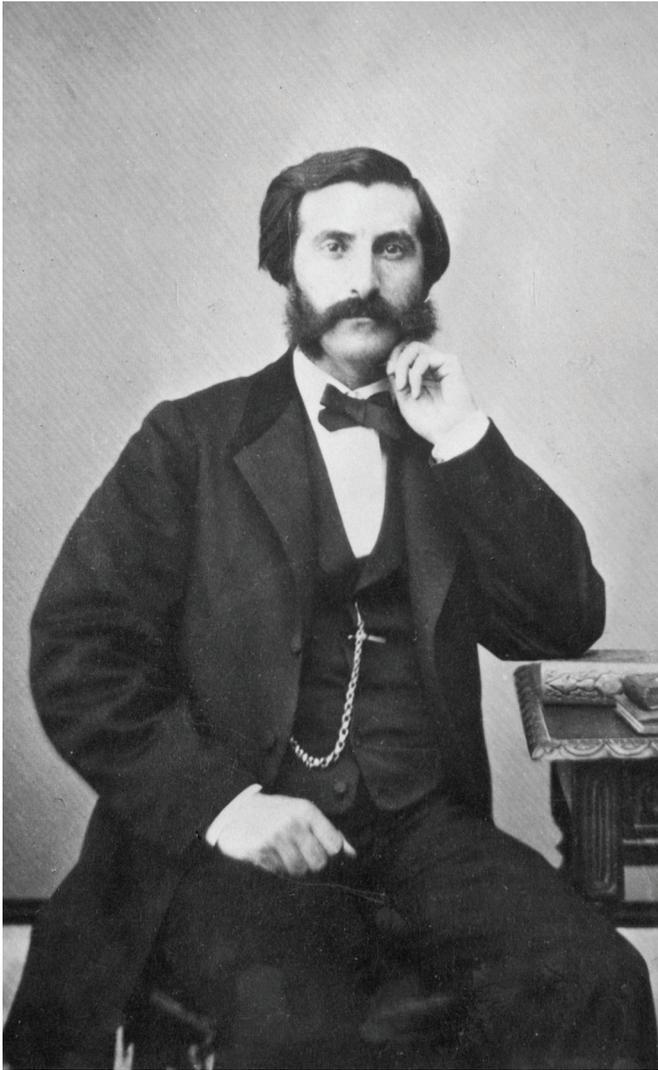


귀스타브 모와니에

1826 - 1910



적십자 창설 당시 귀스타브 브와니에

프랑스와 브뤼셀

귀스타브 르와니에

1826 - 1910

Original Cover by Roger Pfund's workshop

Original French edition:
Éditions Slatkine, Genev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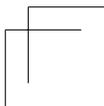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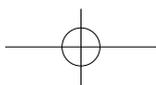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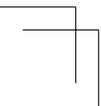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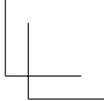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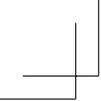
© Humanitarian Geneva

route du Grand-Lancy 92 1212 Grand-Lancy Suisse
president@shd.ch www.humanitarian-geneva.org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Korean Red Cross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대한적십자사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91546-24-0



발간을 기념하며

2011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귀스타브 모와니에를 만나는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적십자인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학창시절 한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익숙한 이름 앙리뒤낭. 반면, 우리에게 귀스타브 모와니에는 적십자의 기원을 잘 아는 이들 외에는 낯설기 그지 없습니다. 이들 두 명의 세기적 인물이 함께 이루어 낸 적십자 초기 운동을 알게 된다면, 서로 쌓아왔던 우정과 갈등 그리고 화해의 노력을 보게 된다면 적십자사 어떤 아픔들을 보듬고 시작되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 전기(傳記)를 통해서, 1800년대 초 평범했던 인물의 탄생이 전 세계에 국제적 규범을 형성하고 201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도주의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끈 그 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앙리뒤낭과 더불어 귀스타브 모와니에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동 전기(傳記)는 귀스타브의 탄생에서부터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 말년의 모습까지 섬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앙리와의 협력, 의견 차이와 오해로 인한 갈등... 그러면서 ‘인도주의’라는 정신을 함께 실현해 나가고자 노력한 한 개인의 삶속에 비춰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 자아와 철학 그리고 집요한 성격으로 적십자를 범세계적 운동으로 이끌며 초석을 다진 귀스타브는 어찌 보면 오늘날 다양한 인도적 요구에 직면한 우리에게, 힘들지만 가치 있는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연하면서도 고집스러운 힘을 가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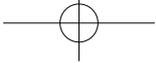
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십자운동이 한국에 뿌리 내린지도 어언 107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동안 적십자가 우리 한국인의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든 원동력 또한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번 전기(傳記)는 앙리 뒤낭의 멋진 생각을 기초로 국제적 운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귀스타브의 모습을 단지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의 초대 총재로서가 아닌 앙리와 함께 했던 시대의 고귀한 생각과 노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스타브 브와니에의 전기(傳記)가 한글로 번역되어 출간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작업이 가능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저자(著者) 프랑스와 브뉴옹(Francois Bugnion)께 감사를 드리며 인도법연구소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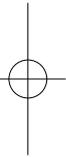
대한적십자사 총재 유 중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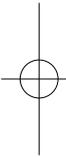
서문

대한적십자사 봉사원과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 독자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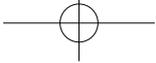
저는 여러분들에게 귀스타브 트와니에를 소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귀스타브 트와니에라는 이름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오늘날의 인도주의 운동에 크나큰 기여를 했습니다.



양리 뒤낭이 자신의 저서인 「솔페리노의 회상」의 마지막 장에서 제안한 두 가지 위대한 생각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전략을 수립한 귀스타브 트와니에는 ‘적십자’를 설립하고 현대 국제인도법의 시초가 된 1864년 8월 22일 최초의 제네바협약을 채택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1864부터 1904년까지 40년 동안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총재로서, 그는 ICRC와 국제적십자운동의 발전을 이끈 법적·학술적 기초를 닦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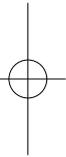


유명한 ‘알라바마Alabama호’ 사건에 깊은 감명을 받은 그는 당시 저명한 국제공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법학회를 설립하는 데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하였으며, 그와 그의 동료들의 노력은 각국의 법률을 체계화하고 단지 힘에 의해서가 아닌 법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1872년 초 제네바협약을 침해하는 일련의 상황을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국제사법제도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바로 오늘날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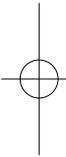


그러나, 그가 생전에 누렸던 무수한 영광과 명예는 그가 사망한 뒤 사람들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귀스타브 모와니에가 서거한 1910년 8월 21일부터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그를 역사 속에서 바르게 자리매김하고자 동 저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앙리 뒤낭의 전기뿐만 아니라 본 전기를 함께 번역발간하기로 결정한 대한적십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적십자 봉사원들과 더불어 한국의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귀스타브 모와니에의 인생뿐만 아니라 적십자가 어떻게 탄생하고 오늘날의 적십자를 있게 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와 정성스럽게 감수해주신 인도법자문위원회 최은범 박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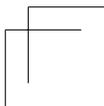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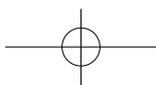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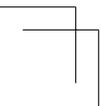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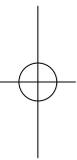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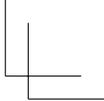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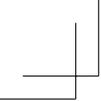


대한제국이 1903년 1월 『1864년 8월 22일자 제네바협약』에 승인하고, 1905년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대한적십자사를 설립한 시점은 귀스타브 모와니에가 적십자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한 그의 생애 후반에 들어서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인생을 바치며 실현하고자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던 두 가지 생각의 실천이 그의 고향인 제네바에서 아주 먼 한국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안다면 상당히 기뻐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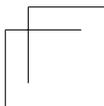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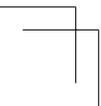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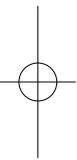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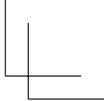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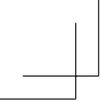
저 또한, 한국의 독자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냅니다.

프랑스와 브뤼옹
국제적십자위원회 총회 위원



목 차

유복한 유년기	14
학창시절: 제네바중등학교와 대학교	16
사회생활로의 조심스러운 첫걸음	19
제네바공익협회와 자선사업	25
전쟁의 여파	29
적십자의 창설	31
적십자의 창설에서 최초의 제네바협약까지	42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	47
제네바협약의 개정	63
알라바마호 사건과 국제법학회의 설립	65
콩고자유국 총영사	69
아버지와 가장으로서의 모습	76
맺음말	77
연표	83
참고문헌	93
사진출처	103



귀스타브 므와니에

1826 - 1910

유명한 사진가 프레데릭 브와소나가 1864년의 제네바협약을 개정한 1906년 외교회의 폐회식 당시 찍은 사진에서 귀스타브 므와니에는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백발의 신사로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을 달고 있다. 4년 후 므와니에가 사망하자 그가 1864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총재로 재직했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에는 유럽과 아시아, 미주대륙 각국으로부터 애도와 추모의 메시지가 쇄도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므와니에의 존재는 완전히 잊혀졌다. 1917년 3월 12일 제네바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강의에서 베르나르 부비에는 스위스 국민들에게 므와니에를 ‘조국을 영예롭게 빛낸 위인들 중 한 명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런 호소도 소용이 없었다. 제네바 시민들과 전 세계인들은 칼뱅이나 루소, 앙리 뒤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귀스타브 므와니에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성공과 명예, 찬사가 가득했던 그의 삶이 어떻게 그처럼 빨리 잊혀졌을까?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유복한 유년기

귀스타브 므와니에는 1826년 9월 21일 제네바의 바스 데 알레망 뒤 가(오늘날의 콘페테레이션 가) 37번지에서 태어났다. 이 곳은 도심 남쪽의 중심이자 상업지구로, 귀족과 귀족 가문의 요새인 도심 북쪽이나 론 강 건너편에 위치한 생제르베 지구와는 반대로 시계 기술자나 보석 세공인, 법랑 생산자 등 수공업자들과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다.

므와니에의 아버지인 자크-앙드레 므와니에(Jacques-André Moynier(1801-1885)는 프랑스 랑그독 지역의 지방귀족 혈통으로 종교적 박해를 피해 17세기에 제네바로 넘어온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이었다. 그는 부친이 설립한 시계 제조회사인 'Moynier & Fils'를 경영하고 있었다. 그의 회사가 속한 길드는 유럽 전역과 거래하며 꼼꼼한 작업과 고급 제품이라는 전통을 일구고 있었다.

프랑스혁명과 왕정시대라는 암울한 시기 이후에 찾아온 제네바의 번영 덕분에 자크-앙드레 므와니에가 득을 봤음은 자명하다. 사업 활동과 함께 정치활동도 시작한 그는 1835년 대표의회에 입성한 것을 시작으로, 대의회(Grand Council)에 진출하여 오늘날 진보파에 해당하는 제3정당의 당원으로 1842년부터 1846년까지 의원직을 수행했다. 제3정당은 1813년 12월 31일 공화국이 부활한 이래 제네바 정가를 지배했던 과두제가 몰고 온 변화뿐만 아니라 혁명적 변화를 주창한 급진당의 의견에도 동조하지 않았다. 1843년 12월 13일 자크-앙드레 므와니에는 주의회(주정부)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급진



1. 귀스타브 프와니에 (당시 8세)
연필 스케치 (장-레오나르 뤼가르동)

혁명이 발생한 후 1846년 10월 9일에 사임했다.

1824년 11월 17일 자크-앙드레 므와니에는 쿠앙트랭과 제네바 근처 아인 지방에 토지를 소유한 이작 테오나의 딸 로르 테오나 Laure Deonna와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슬하에 외아들 귀스타브 므와니에를 두었다.

귀스타브 므와니에는 자신의 많은 저서에서 유년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년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 그러나 그가 투철한 공공심(애국심)과 정직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유복한 유년기를 보냈음은 거의 틀림없다. 그의 부모는 고향인 제네바와 개신교 신앙에 큰 애착을 보였으며 그들의 애정과 기대를 외아들에게 쏟아부었을 것이다.

학창시절: 제네바중등학교와 대학교

어린 귀스타브 므와니에는 명망 있는 사립학교 에꼴 프리바를 졸업하고 제네바중등학교에 입학했다. 종교개혁가 장 칼뱅Jean Calvin이 설립한 제네바중등학교는 그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고수하고 있는 덕망 있는 교육기관이었다. 입학 초기는 순탄치 않아서 므와니에는 수업을 재수강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점차 성적이 좋아졌다. 동시에 그는 양친의 친구인 바르텔레미 부비에 목사에게 종교 수업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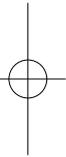
이 시기에 아버지 자크-앙드레 므와니에는 아들을 자신의 활동



에 적극 참여시켰다. 그래서 어린 귀스타브는 네 차례에 걸쳐 아버지와 함께 파리로 여행을 하게 되었다.

1842년 제네바중등학교 졸업 당시 귀스타브 므와니에는 겨우 16살이었다. 대학에 입학할 나이가 되기까지 그는 제네바 아카데미 Académie de Genève에서 4년간 수학한 후 20세가 되어 대학입학 자격을 얻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없었던 어린 므와니에는 아버지의 조언대로 법학부에 입학했다. 무엇을 배우게 될 지는 확실히 몰랐지만, 법학을 공부하면 빈듯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아버지처럼 정계에 진출하여 제네바 시(市)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학기는 가을에 시작했기 때문에 므와니에는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여름을 보내며 독일어를 연마했다. 그런데 그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지내는 동안 제네바의 정국과 그의 부모의 삶을 급격히 변화시킨 사건이 일어났다.

1846년 10월 6일 생제르베에서 선포된 급진적 혁명은 3일 만에 승리를 거두었다. 주의회 의원들은 10월 9일 일제히 사임하게 되었다.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낀 자크-앙드레 므와니에는 아내와 함께 피에드몽-사르디니아 왕국령인 프랑스의 안시로 몸을 피했다. 그리고 그 후 므와니에 부부는 친척과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 파리로 거처를 옮겼다.

귀스타브 므와니에도 곧 이어서 부모가 머물고 있는 파리로 돌아가 특별한 확신 없이 법학부에 입학했다. 따라서 제네바에서 법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 들어선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모든 귀족가문 출신인 아카데미의 법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고 1년이 더 지난 후에야 ‘올바른 신념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은 교수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러다가 1848년 혁명이 일어나 7월 왕정이 무너지자 므와니에 부부는 곧 파리를 떠났다. 1849년 8월 4일, 자크-앙드레 므와니에는 제네바 근방의 페르네(오늘날 아인 지방의 페르네-볼테르)의 ‘라 페지블’이라는 저택을 구입해 정착했고 귀스타브는 그곳에서 방학을 보냈다.

귀스타브 므와니에는 아버지의 권유로 소르본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했고, 낯선 입학생들 천명에 둘러싸여 공부를 해야 했다. 처음에는 학교에 정을 붙이지 못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새로 시작한 법학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빛의 도시’ 파리의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극장 공연을 좋아했고, 특히 라셀이 라신의 작품 〈앙드로마크〉, 〈페드르〉, 〈아탈리〉에 출연하여 극찬을 받던 테아트르 프랑세 극장을 즐겨 찾았다. 또한 파리에 거주하는 제네바 시민들이 주최하는 저녁모임과 무도회에도 참석하곤 했다. 성공한 은행가인 바르텔레미 파카르의 딸로 파니라고도 알려진 잔-프랑수아 파카르Jeanne-Françoise Paccard를 만난 것은 아마 그러한 무도회 중 한 곳에서였을 것이다. 귀스타브는 파리를 떠나기 전에 파니와 약혼했다.

그렇지만 귀스타브 므와니에가 학업을 소홀히 하진 않았다. 1850

년 봄, 그는 학부 학위논문 두 편을 제출했다. 한 편은 로마법에 대하여 라틴어로 작성한 논문이고, 다른 한 편은 프랑스어로 작성한 민법에 관한 논문이었다. 그는 구두시험에서 최고점수를 받았다.

사회생활로의 조심스러운 첫걸음

학업을 마쳐갈 즈음 젊은 귀스타브는 제네바와 파리 사이에서 정착을 망설였다. 파리는 다채로운 문화로 그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고 약혼녀가 사는 곳이기도 했으나 결국 부모님과 고향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제네바를 선택했다.

제네바로 돌아간 귀스타브 므와니에는 곧바로 변호사 임용시험 준비에 뛰어들어 1850년 7월 2일부터 이틀간 「로마법에서의 금지규정(*Prohibitions under Roman Law*)」이라는 논문으로 구술시험을 치르고 일주일 후, 그는 취임선서를 하고 로펌 ‘구테 & 오테오’에서 수습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전문직에 첫걸음을 내디딘 젊은 변호사 므와니에는 이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부모님이 사는 페르네의 라 페지블 저택 근처에 위치한 개신교 교회에서 파니와 1851년 6월 14일 결혼식을 올렸다. 이 젊은 부부는 코라테리 가 10번지에 보금자리를 잡고 일요일은 페르네나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세슈롱에 므와니에의 장인이 소유하고 있던 훌륭한 저택에서 보내곤 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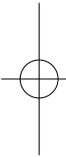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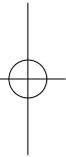
1) 현재 므와니에 별장



2. 귀스타브 브와니에 (당시 25세)
연필 스케치 (장-레오나르 튀가르동)



학업을 마친 젊은이들이 대부분 직장을 탈출구로 생각하고 구직에 서둘렀던 반면, 귀스타브 므와니에의 경우는 조금 달랐던 것 같다. 가정에 대한 책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습생활을 마치지 못한 채 1851년 9월 16일 ‘구테 & 오데오’를 그만 두었다. 그는 변호사 활동보다는 순수하게 법률적 논증 그 자체에 더 매력을 느꼈음이 분명하다. 그는 3년간 다른 일들을 시도해 보았다. 알고 지내던 사업관리인의 법률 자문가로 일하다가 화재보험사 ‘유니온 드 파리’의 대표를 지내면서 쾰스 지방을 담당하기도 했다. 후에는 리용과 제네바 사이에 선로를 건설하는 철도회사의 회계사로 일하기도 했으나 모두 잠깐 스쳐가는 일들이었다. 놀랍게도 토지 등기보조원 자리까지 지원했지만, 채용되지는 않았다. 1854년 가을, 그는 리용-제네바 철도회사의 회계사 자리와 ‘유니온 드 파리’의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 후로 므와니에가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했다는 기록은 없다.



가족의 재력, 특히 아내의 재산 덕분에 므와니에는 사실상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그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그가 받은 교육, 법조계에서의 경력과 그의 관심사, 19세기 중반 제네바에 아직도 건재하던 그리스식 전통, 그리고 아버지의 활동 등을 통해 므와니에는 평생 제네바 시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846년의 급진적 혁명으로 인해 귀족계층 및 귀스타브 므와니에가 속한 중간 상공계층은 정계에서 축출된 상황이었다. 사실 므와니에는 고향인 제네바의 시정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스위스 통일전쟁(1847년 11월) 이후의 새로운 연



3. 파니라고도 알려진 잔-프랑수아 파카르 (1828-1912)

방 건설에 관여하지 않았다. 므와니에는 당시 소르본대학에서 공부 중이었기 때문에 통일전쟁을 멀리서 주시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생계를 책임질 의무가 없었고 사회적 지위 때문에 정치생활에서 배제되었던 므와니에는 다른 방향에서 자신의 소명을 찾게 되었다. 전 생애에 걸쳐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자선사업이었다.

“나는 제네바 시민과 내 조국을 돕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고 고맙게도 피땀 흘려가며 가족을 부양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기만 하면 된다네. (……) 나는 복지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네.”

-므와니에가 1853년 1월 7일 친구 오귀스트 부비에에게 쓴 글 중-

1850년 12월 29일, 프랑수아 부디에 목사의 조언에 따라 므와니에는 도제들을 지원하는 부조협회Relief Society에 가입했다. 그는 가입하자마자 서기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장 자리에 올랐다.

부조협회 서기로 일할 당시 므와니에는 제네바에서 활동 중인 자선단체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그는 ‘제네바공익협회Geneva Public Welfare Society’와 접촉하게 되었고 1855년 2월 15일에 이 협회에 가입했다. 므와니에는 곧 자신이 협회를 운영해야 할 상황이 되자 이를 받아들였고, 결국 이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접하게 되었다.



4. “라 페지블La Paisible” 저택 (19세기말)



5. 브와니에 별장 (19세기말)

제네바공익협회와 자선사업

제네바공익협회는 18세기 자유주의와 칼빈주의의 산물이었으며, 설립 당시부터 신학적 소명의식뿐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도 전달했다. 또한 나폴레옹이 벌인 전쟁과 산업화의 태동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빈곤문제에 대응하고자 했다. 1828년 1월 10일에 열린 창립 회의에는 주(州)의회 위원들과 아카데미의 교수, 목사, 기타 유명인사들이 참여했다.

협회는 빈곤의 구제 및 퇴치를 목적으로 조직된 기관들의 개선을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자선사업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보다는 사회문제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여 해결책을 찾는 일에 집중했다. 계몽주의 시대의 전통에 따라 협회는 때때로 연구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한 연구 작품을 시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판하기도 했다. 간단히 말해 이 협회는 노동자 계층의 삶의 상황에 관심을 갖는 고위층 시민들의 모임이었다.

그러나 협회 창립자들의 너그러운 의도만으로는 제대로 된 구제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었다. 협회가 곧 무기력한 상태로 빠져들자 회원들은 완전한 와해를 막기 위해 다른 단체와 합병을 고려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브와니에는 자신의 열정을 협회에 쏟기로 결심했고 곧바로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이 되었다. 그는 우선 협회의 도서관을 재정비하여 사회문제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켰다.

1856년 9월, 그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제네바공익협회의 대표로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복지회의(International Welfare Congress)’에 참석했고, 이 회의를 통해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그는 국경을 초월하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때부터 국제협력은 그의 주요 활동분야가 되었다.

따라서 그가 1857년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다음 회의에도 협회의 대표로 참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마침내 1857년 12월 10일, 므와니에는 31세에 불과한 나이에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10년간 그 직을 맡았다. 하지만 므와니에는 사실 전 생애에 걸쳐 협회의 업무를 도맡았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시기에 제네바공익협회는 가장 큰 성과를 이루었다.

1858년, 제네바공익협회의 첫 번째 회보가 발행되었다. 므와니에는 분기별로 회보를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수년간 발행을 책임졌다. 1966년과 1978년 사이에 중단된 기간을 제외하고 이 회보는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다.

그러나 므와니에는 협회의 운명을 주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가 개인적 차원에서 협회를 대신해 수행한 많은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 제네바의 자선활동(1857)
- 오를레앙 철도회사의 노동자 지원제도(1857)
- 오를레앙 철도회사의 직원에 대한 수익배분(1858년 6월)
- 제네바 공익단체들에 대한 통계(사회단체 또는 자선단체 조사, 1860년 2월)
- 제네바 주(州)에서 유기되거나 고아가 된 아동에 대한 원조의

역사(1860)

- 최우량 화재보험 체계(배심 보고서, 1861)
- 제네바공익협회의 도서목록(1862)
- 제네바 주의 주류 남용(1863년 1월)

이렇게 다양한 연구를 통해 므와니에는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탐구했고, 사회학은 그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는 스위스에서 또 다른 학문, 즉 사회학과 사회과학을 보완하는 통계학의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다. 므와니에는 1863년 10월 1일 제네바에서 스위스통계협회를 설립하는 데에도 참여했으며 초대 회장을 지냈다.

가정사정으로 인해 므와니에는 1863년 9월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통계대회에 스위스 대표로 참석해 달라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거절해야 했으나 피렌체(1867년)와 헤이그(1869년)에서 열린 세계통계대회에는 스위스 대표로 참석을 했다.

제네바와 스위스의 사회문제에 대한 연구와 함께 므와니에는 자선사업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고, 1862년 6월 9일부터 14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국제복지회의에 제네바공익협회의 대표로 참석했다. 그는 국제복지회의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국제적인 복지협회 조직을 위한 조사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제네바공익협회를 대표하여 다음에는 제네바에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럼 적십자 창설과 함께 새로운 지평이 열리면서 귀스타브 므와

니에의 관심은 국내 차원의 사회문제들로 부터 멀어졌을까? 적십자 창설 이후에 발표된 다음 출판물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스위스의 노동계급 제도(연방의회 위임연구, 1867년 2월)
- 일요일 휴무 준수에 대한 협력(배심 보고서, 1870)
- 노동자에 대한 경영수의 분배에 관하여(1870)
- 제네바 자선사업 연감(1875)
- 환자를 무상 진료하는 제네바의 각종 단체(1878)
- 제네바공익협회 창립50주년(1878)
- 제네바의 공익단체(1880)
- 제네바에서 무알콜 음료를 제공하는 식당 협회(1881)
- 스위스 이민 문제(1882)
- 화장(火葬)에 관하여(1883)
- 19세기 제네바 형무소의 역사(일부, 1886)
- 해외에 거주하는 스위스 여교사, 여성 가정교사 및 가정부의 보호를 위한 제네바의 자유행동권에 관한 기록(1896) 등

그러나 알프스산맥 건너편에서 벌어진 유혈충돌로 인해 그는 곧 방향을 바꾸게 된다.

전쟁의 여파

1859년 6월 24일, 프랑스-사르디니아 연합군이 이탈리아의 솔페리노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서 오스트리아 병력과 교전을 시작했다. 이 전투는 이탈리아의 독립과 통일을 위한 결정적인 전투였던 동시에, 워털루 전쟁 이후 유럽에서 발발한 가장 끔찍한 유혈사태였다. 10시간에 걸친 교전 끝에 6천 명 이상의 사망자와 4만 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다.

프랑스군 의무기관은 속수무책이었다. 사실 의료팀은 전투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의무대는 보급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보급대 장교들이 군수품 수송을 위해 의무대에 속한 차량을 징발한 상황이었다. 그 결과 의사와 간호원 대부분은 후방에 남아 있었다. 프랑스 군대의 의무시설은 전장 근처에 한 곳밖에 없었는데, 의사 세 명과 간호사 여섯 명으로 구성된 경비대의 간이 야전병원이었다. 이 병원은 솔페리노에서 9킬로미터 떨어진 카스틸리오네 델 스티비에라는 작은 마을에 세워져 있었다.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 병사들은 전우들과 마을 농부들의 도움을 받아 의약품과 물, 식량, 피신처를 찾고자 카스틸리오네까지 갔다. 5천 명이 거주하는 마을에 부상자의 수는 곧 9천 명이 되었다. 마을에서 제일 큰 교회인 마조레 성당(*Chiesa Maggiore*)에는 500명이 넘는 부상자들이 밀려 들었다.

6월 24일 저녁, 제네바의 실업가 앙리 뒤낭(1828-1910)이 이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의사도 아니었고 급한 개인 용무가 있었지만,

성격상 자신이 목도한 어려움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는 사흘 밤낮 동안 부상자들을 돌보며 사비를 들여 그 고난의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펼쳤다.

뒤낭이 제네바에 돌아온 1859년 7월 11일에 이탈리아의 군사작전은 막을 내렸다. 그는 곧바로 알제리아의 사업 문제로 바쁘게 지냈다.

그러나 뒤낭은 솔페리노의 부상자들을 잊을 수가 없었다. 1861년 그는 제네바에 틀어박혀 이탈리아 군사작전에 대해 조사한 후에 획기적인 저서 『솔페리노의 회상(Un souvenir de Solferino)』을 썼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현대 군사 역사 기록에 대한 방식으로 전쟁의 기술에 대한 훌륭한 서사기록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반부부터 글의 어조를 바꾸어 끔찍한 냄새와 비명, 고통, 자포자기와 죽음의 기운에 둘러싸인 부상자들과 죽어가는 군인들로 가득찬 마조레 성당에 대한 묘사를 통해 전쟁의 이면을 낱낱이 드러낸다.

뒤낭은 책의 후반부에서 다음의 두 가지 사안을 제안하는 동시에 강한 호소를 했다.

- 각국에 부상자 보호를 위한 구호단체를 설립하자. 그리고 그것들은 민간 자선(慈善) 자원으로 운영함.
- 구호단체를 위해 일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전장에 투입된 의무 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을 채택할 것.

그의 첫 번째 제안은 적십자사와 적신월사의 창설로 이어졌고,

이들 단체는 현재는 187개 국가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두 번째 제안은 현대 국제인도법의 출발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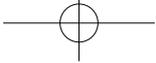
뒤낭은 1862년 11월 제네바에서 자비를 들여 『솔페리노의 회상』을 출판했다. 초판본은 비매품으로 1,600부가 인쇄되었다. 이 책은 일종의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으로, 뒤낭이 왕실, 정계 인사, 군사령관, 의사, 문인, 유명 자선사업가들에게 보내는 성명서였다.

이 책은 곧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몇 개월 만에 재판이 두 차례 더 인쇄되어 대중에게 판매되었고, 네덜란드어와 영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로 번역되었으며 독일어는 세 가지 버전으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의 수 말고도 중요했던 것은 독자층의 수준이었다. 왜냐하면 매우 영향력 있는 독자들로부터 뒤낭의 제안과 호소에 공감한다는 편지가 그에게 수백 통씩 도착했기 때문이다.

적십자의 창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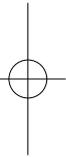
뒤낭은 자신의 저서 『솔페리노의 회상』을 다수의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보냈고 그 중에는 제네바공익협회장 귀스타브 므와니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학창시절부터 안면이 있던 두 사람은 모두 제네바 지리학회 회원이었다.

므와니에는 감성적인 성격이 아니었지만, 뒤낭의 묘사에 ‘매우



감명 받았다' 고 인정했다. 그는 책을 다 읽자마자 뒤낭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뒤낭은 탁월한 성과를 낼 수 두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지만, 이를 실행할 전략이 있어 보이진 않았다. 므와니에는 뒤낭을 처음 만났을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당시 유일하게 구호단체 설립을 주장하던 사람이 뒤낭이기에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방안이 분명히 있고,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구호단체 설립 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자기 질문을 던졌을 때, 나중에 구체화되긴 했지만 아이디어를 실행할 계획에 대해 너무 막연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뒤낭은 구체적인 전략이 없었던 반면에 므와니에는 제네바공익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었고, 브뤼셀, 프랑크푸르트, 런던에서 열린 국제회의 참석경험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뒤낭의 구호단체 설립제안을 제네바공익협회에 제안해보자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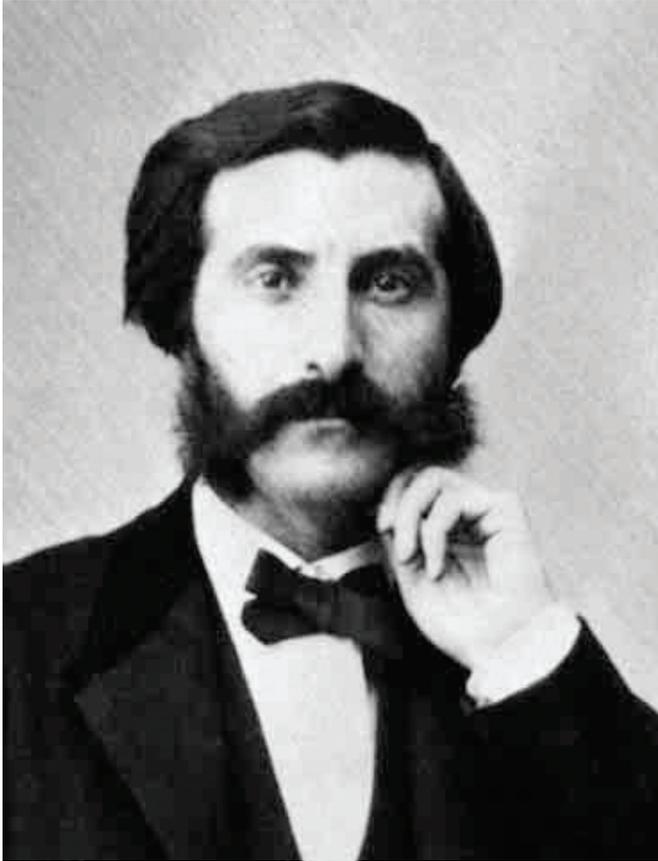
1862년 12월 15일에 열린 공익협회 총회에서 그 제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사록에는 ‘우리 협회가 다룰만한 사안이 아니다.’ 라고 적혀있었다. 다음의 수년후의 므와니에의 기록을 보면 협회 회원들이 왜 그들 앞에 놓인 도전에 주춤할 수 밖에 없었는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작은 나라의 협회로서 지역현안에만 전념하고, 제한된 영역을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법도 마음껏 활용할 수 없는

단체가 그렇게 거대한 사안에 대해 모험을 시도하는 꿈을 꿀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므와니에는 쉽게 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1863년 1월 28일에 열린 공익협회 총회에서 뒤낭의 제안을 다시 상정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15일 총회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목표를 명확하게 정했다. 국제복지회의가 1863년 9월 베를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기에, 므와니에는 제네바공익협회가 뒤낭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초안을 작성해 국제복지회의에 제안할 것을 주장하여 동의를 얻어냈다.

이에 고무되어 므와니에는 2월 9일에 공익협회 총회를 소집했지만, 총회는 뒤낭의 제안에 회의적이었다. 공익협회 회원들은 고귀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협회는 베를린회의에 므와니에의 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고, 기초(起草)위원회(drafting committee) 위원으로 앙리 뒤낭, 귀스타브 므와니에, 루이 아빠아 박사, 데오도로 모노아 박사, 기욤 뒤푸르 장군 등 5인을 임명했다. 뒤푸르 장군은 자신의 권한과 명망을 십분 활용해 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다. 몇 년 후에 국제적십자위원회로 개명된 이 국제부상자구호위원회(제네바위원회, 일명 5인위원회)는 1863년 2월 17일에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여기에서는 ‘부상자 구호를 위한 국제상설위원회’로 명명하고, 제네바공익협회가 부여한 권한이 소멸하더라도 계속 활동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의가 공익협회의 결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놀라워 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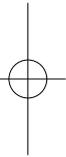


6. 적십자 창설 당시의 귀스타브 므와니에



수도 있지만, 기초위원회가 설립 당시부터 분명하게 설정한 목표를 생각하면 상황이 이해가 된다. 이 위원회는 국가별 구호단체 설립, 자원봉사자 모집, 군 당국과의 접촉, 구호협회의 상징으로 각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된 식별표장 채택을 목표로 했다. 이렇게 하여 뒤낭은 『솔페리노의 회상』을 통해 드러냈던 자신의 소망, 즉 부상자 및 구호요원을 보호하는 협약을 만들고자 했던 소망을 마침내 실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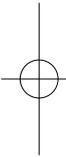
뒤푸르 장군이 위원장에, 므와니에는 부위원장에, 뒤낭은 서기로 임명되었다. 뒤낭은 마침내 베를린회의에서 제안하게 될 문서를 작성하도록 요청 받았다.



3월 17일에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각국이 뒤낭에게 전해온 지지 의사들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토의를 통해 향후 설립될 구호단체의 개요를 정의할 수 있었다.

한참 후인 8월 25일에 열린 세 번째 회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으로 시작되었다. 므와니에는 베를린에서 9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복지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뒤낭의 지지하에 므와니에는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제네바에서 회의를 주최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뒤낭이 작성한 결의사항 초안의 각 조항을 검토했고, 이후 뒤낭과 므와니에가 최종 수정을 하고 초대장을 작성했다.

회의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되어 9월 1일 위원회는 제네바에서 10월 26일 개최될 예정인 회의초대장을 발송했다. 향후 설립될 구호단체의 기본 원칙에 관한 결의사항 초안이 초대장에 첨부되었지만,





7. 국제부상자구호위원회 (5인 위원회), 1863년

뒤낭이 중요하게 생각한 자원봉사 간호원들과 군대 의무요원의 중립적 지위에 대한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뒤낭은 초대장 발송 후 제네바회의가 열리기 전에 잠시 짬을 내어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통계대회에 참석했다. 브와니에는 아내가 셋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 이 대회에 함께 참석하지 못했다.

뒤낭과 브와니에의 계획과 이 통계대회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19세기 중반의 의사들은 오늘날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임상 수단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 파스퇴르의 연구가 진행된 후에야 질병의 원인을 규명할 길이 열렸다. 그래서 당시 의사들은 질병의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상황에서, 오직 통계에 의해서만 치료법을 찾을 수 있었고 의술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즉 어떤 치료법이 최선의 것인가를 통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세계통계대회 네번째 세션에서는 군의관들을 한자리에 모았던 것이며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뒤낭의 저서 『솔페리노의 회상』과 위원회가 발송한 회람을 받아본 사람들이었다. 네덜란드 군의관인 바스팅 박사도 그 중 한 명으로 그는 뒤낭의 책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하기까지 했다.

바스팅 박사의 지지하에 뒤낭은 위원회의 계획을 이 대회에서 제안할 수 있었다. 일부 의사들이 뒤낭의 책에 감명받고 위원회의 회람에 주목했으며, 의료진의 중립적 지위에 대한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졌다. 그 회의에 참석한 의사들은 전쟁터에서 전투병이 아닌 의사와 간호부가 얼마나 많이 살해 되었는지를 제네바위원회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위원회의 계획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같은 지지에 힘입어 뒤낭은 베를린에서 9월 15일자로 새로운 회람장을 발송했다. 동료들과 상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네바 위원회의 이름으로 뒤낭은 군대 의무요원 및 ‘자원봉사 구호대원’의 중립적 지위를 인정했다. 이로인해 위원회의 존재가 기정사실화되었다.

뒤낭은 제네바로 돌아가는 길에 드레스덴, 비엔나, 뮌헨, 슈투트가르트, 다름슈타트, 카를스루에에 들렀다. 이들 각국 수도에서 그는 열렬히 환영받았다. 뒤낭은 『솔페리노의 회상』으로 사람들이 감명받은 상황을 잘 활용하여 부상자 구호운동을 호소하는 한편, 게르만 공국들이 제네바에서 열릴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도록 설득했다.

10월 19일에 제네바에 도착한 뒤낭은 여행결과에 매우 만족한 상태였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통계대회의 결과를 듣기 위해 모인 동료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베를린회람장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브와니에는 뒤낭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냉정하게 이야기한다. 베를린회람장을 유감스럽게 생각했지만 이를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기에 그냥 잊어버리는 수 밖에 없었다.

뒤푸르 장군에 의해 전쟁터에서 군 의무기관의 역량부족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1863년 10월 26일에 개막되었다. 여기에는 정부대표 18명, 단체 대표 6명, 개인자격으로 7명, 제네바위원회 회원 5명이 참석하여 총 36명이 참여했다.

뒤푸르 장군이 회의취지를 소개한 후에, 의장인 브와니에가 제네

바위위원회의 제안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회의를 주재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호단체 설립에 대해 대다수가 지지했다. 그러나 회의가 거의 끝날 무렵까지도 뒤낭이 베를린회담장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를 바스팅 박사가 알아채었고, 브와니에에게 베를린 회담장의 제안사항에 대해 언제 논의할 것인지 질의를 하였고 예정에 없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바스팅 박사는 ‘제네바위원회는 정부 대표들이 어떤 이유로 이 회의에 참석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발언하였다. 한마디로 거기에는 큰 오해가 있었던 것이다. 제네바위원회는 베를린회담장에서 제안한 군대 의료요원 및 자원봉사 구호요원의 중립적인 지위에 대해 각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지만, 각국 대표들은 바로 그러한 제안사항, 특히 군의관의 중립적 지위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브와니에를 비난하는 것은 공정한 자세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오해가 풀리자마자 종전에 보인 적절치 못한 입장은 고집하지 않고 바로 논의를 주도하여 베를린회담장의 제안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해 냈기 때문이다.

제네바회의는 향후 60년간 적십자사들의 토대를 구성할 10개의 결의사항(Resolutions)을 채택한 후, 10월 29일에 폐막하였다.

《제네바 국제회의의 결의사항》

본 회의는 군대 의무기관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 부상자에 대한 구호를 열망하며 다음의 결의사항을 채택한다.

제1조. 각국은 전시 또는 필요 시 총력을 다해 군대의 의료활동을 지원할 위원회를 구성한다. 가장 유용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각국 위원회를 조직한다.

제2조. 중앙본부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해 여러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각 위원회는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필요 시 의료활동을 제공한다.

제4조. 전시에 구호활동이 유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분과는 평시에 대비한다. 특히 구호물자를 모두 준비하고, 자원봉사 의료진을 훈련하고 교육한다.

제5조. 전시에 교전국의 위원회는 각 부대에 구호활동을 최대한 제공한다. 특히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전시 편제에 배치하고, 군 당국과의 협의 하에 부상자를 치료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다.

교전국의 위원회는 중립국 위원회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또는 군 당국의 동의 하에 위원회는 자원봉사 의료진을 전장에 파견해 군령에 따라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각 위원회는 부대에 속한 자원봉사 의료진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공한다.

제8조. 모든 국가에서 자원봉사 의료진은 공통된 식별표장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완장을 착용한다.

제9조. 각국 위원회와 분과는 총회에서 각국의 활동 결과를 공유
하고, 구호활동을 위한 수단을 협의한다.

제10조. 각국 위원회는 당분간 제네바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연락
을 취한다.

바스팅 박사의 주장으로 자원봉사 간호요원과 의료진 보호에 대
한 문제가 논의 되었지만, 제네바 국제회의는 이에 대한 결정권이 없
었기에 각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상기 결의안과 별도로 제네바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
(Recommendations)을 채택한다.

1. 각국 정부는 향후 조직될 구호위원회를 적극 후원하며, 최선을
다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2. 전시에 교전국은 구급차 및 군병원의 중립을 선포하고, 또한 공
식 의료진, 자원봉사 의료진, 부상자 구호를 위해 전쟁터에 있
는 주민, 부상자 모두가 철저한 중립상태임을 인식해야 한다.
3. 모든 부대의 의무대 또는 최소한 같은 부대에 속하는 구호봉사
활동자는 공통된 표장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4. 모든 국가의 구급차와 병원에 통일된 깃발을 부착해야 한다.”

1863년 10월에 열린 제네바회의의 결의사항은 각국 적십자사
의 활동과 법체계의 토대가 되었으며, 그 후 1928년 헤이그에서
열린 제13차 국제적십자 회의는 국제적십자 규정(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을 채택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역사에 정통했던 피에르 브야시가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처럼, 1863년 제네바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사항과 권



고사함이 향후 전쟁법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들은) 전시 부상자 구호를 위한 기본 헌장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보기 드물게 인류의 운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기본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쟁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과 수많은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 인도주의 정신을 담고 있는 인류의 위대한 문서들 속에서 진정 인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적십자의 창립에서 최초의 제네바협약까지

1863년 11월 9일에 열린 회의 의사록에는 ‘제네바위원회는 제네바회의를 통해 기뻐할 만한 순조로운 성과를 이루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이 회의는 완벽하게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좋은 의도가 아직 실행에 옮겨진 것은 아니었다. 제네바회의에서 므와니에가 제안했던 사안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위원회는 회의에 참가했던 대표자들에게 11월 15일에 서신을 보내, 각국의 위원회 결성을 촉구하고 각국 정부가 결의사항과 권고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지킬 수 있는지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초의 부상병 구호단체가 1863년 말 독일 뷔르템베르크에서 설립되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올덴부르크 대공국, 벨기에, 프로이센에서도 구호단체가 조직되었다. 제네바위원회는 회의 참석자들이 국가별 위원회 결성을 주도하도록 격려했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으며, 제네바회의록 사본을 발송했다. 이처럼 위원회는 결의안에 대한 각국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분주히 노력했다.

또한 제네바위원회는 1863년에 채택된 제네바회의 권고사항을 조약에 근거한 규칙으로 변경하여 그것이 체약국을 법률로 구속할 수 있도록 할 권한을 가지는 외교회의를 준비했다. 위원회는 1863년 11월 15일에 이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자체적으로 외교회의를 소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제네바위원회는 이를 대신 수행해줄 정부를 모색했다. 위원회는 베른과 파리 중 어디를 택할지 고민했고, 이로 인해 므와니에와 뒤낭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다. 므와니에는 스위스가 외교회의 초대장을 발송해줄기를 원했지만, 1863년 파리로 돌아간 뒤낭은 당시 유럽대륙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프랑스의 후원이 외교회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위원회가 외교회의를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프랑스 외무부는 향후 후원을 약속하면서 스위스 연방의회에 외교회의 주재를 일임했다.

프랑스의 외교적 지원에 힘입어 스위스 연방정부는 제네바위원회 활동의 후속작업으로 1864년 6월 6일에 외교회의 초대장을 오스만 제국을 포함한 전 유럽국가를 비롯하여 미국, 브라질, 멕시코에 발송했다. 여기에는 므와니에가 작성한 협약초안이 동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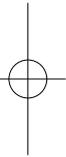
외교회의는 1864년 8월 8일에서 22일까지 제네바시청에서 열렸고, 16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뒤푸르 장군과 귀스타브 므와니에가 스위스 대표단의 일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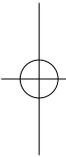


회의에 참가했다. 회의 개최국의 대표장으로서 뒤푸르 장군이 자연스럽게 의장으로 임명되었으나 그는 므와니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협약초안 작성자로서 므와니에가 다른 누구보다 각국 대표들에게 조언을 잘 할 수 있고, 여러 조항을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밖의 제네바위원회원들도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었지만 논의나 표결에서는 제외되었다.

이 외교회의는 갈등을 해결하거나 상반되는 이해를 중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일반적인 규칙제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회의와 달랐다. 이 회의의 성격은 회의 종료 시 스위스 전권 대표가 연방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외교회의에서 드문 경우이지만,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도 없었고, 상반되는 요청을 중재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의견일치를 보았다. 유일한 목표는 국제법에서 진일보한 인도주의적 원칙에 관한 공식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즉 부상병과 그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중립성을 인정하고자 했다.”



다만 각국 적십자사의 전신인 부상병구호단체가 파견해 군대에 배속된 자원봉사 간호요원들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각 대표단의 의견이 달랐다. 프랑스 대표단은 자신들이 자원봉사 간호요원들을 언급한 협약에 서명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가 하면, 다른 대표단은 자원봉사 간호사들이 적절하게 보호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회의에서는 절충안이 채택되었다. 전시에 부대에 배치된 자원봉사 간호요원들은 군대규율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군대 의무기관의 일부

로 간주될 것이고, 따라서 협약에서 자원봉사 간호요원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중립성도 함께 보장받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제네바협약은 1864년 8월 22일에 조인되었다. 그때까지 이 협약 만큼 전시에 상대국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서는 없었다.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지(戰地)에서의 부상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제1조. 구급차량 및 군 병원은 중립으로 인정되며, 그것들이 부상자 및 병자를 수용하고 있는 한 교전자들은 이를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조. 병원 및 구급차량의 요원(병참담당자, 의사, 행정요원, 수송원, 군중요원 포함)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리고 수송 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남아 있는 동안 동일한 중립의 혜택을 향유한다.

제3조. 전조(前條)에 명시한 인원은, 적국이 점령한 이후라도, 병원 또는 구급차량에서 그들의 임무를 계속 이행하거나 또는 그들이 속한 부대에 합류하기 위하여 철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임무를 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속한 최전방부대가 있는 곳까지 점령국군에 의해 인도(引導) 되어야 한다.

제4조. 군병원의 자재는 전쟁법규에 따라 유지되므로, 그러한 병원에 속한 사람들은 철수시 그들의 개인적 사물만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구급차량은 비슷한 상황에서, 장비를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

제5조. 부상자를 돕는 지역주민들은 보호되어야 하고 자유롭게 거주하여야 한다. 교전국들의 장군들은 지역주민들이 인간애를 호소하며, 인도적 행위를 수행할 주민들이 중립이어야 한다는 것은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

민간가옥에 수용되어 치료받는 모든 부상병들의 보호는 보장되어야 한다. 부상자에게 수용시설을 제공하는 지역 주민은 숙박지의 사용명령 그리고 군역의 일부를 면제받아야 한다.

제6조. 상병자는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수용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군사령관은 쌍방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상황이 허용되면, 교전중 부상당한 적국 전투원들을 적국의 최전방 부대에 즉각 인계할 수 있다. 상처가 치유된 후에도 군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적국 부상자들은 송환되어야 한다. 또한 기타의 자들도 적대행위 기간 중 다시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송환 될 수 있다. 부상자 후송부대와 이를 행하는 요원들은 완전히 중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7조. 병원, 구급차량 및 부상자 후송부대를 위하여 공통된 식별 깃발(표장)이 채택되어야 한다. 그것(표장)은 모든 상황에서 국기(國旗)와 함께 게양되어야 한다. 중립의 혜택을 지니는 요원은 완장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것은 군

당국에 의해 발급되어야 한다.

깃발(표장)과 완장은 흰바탕에 적십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8조. 이 협약의 이행은 각국 정부의 훈령을 따르는 교전국 군대의 군사령관에 의하여 그리고 이 협약에서 규정된 일반 원칙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제9조. 협약당사국들은 제네바의 국제회의에 파견할 전권대사를 임명할 수 없었던 국가들의 협약 가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이 국가들에 통지할 것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협약은 개방되어 있다.

제10조. 이 협약은 가능한 4개월 이내에 비준되어야 하며 또한 비준서는 스위스 베른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각국 전권대사들은 이 협약에 서명했으며 그리고 그들의 서명은 이 협약의 문본에 첨부되었다.

이 협약은 1864년 8월22일 제네바에서 이루어졌다.』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

제네바위원회는 뒤낭이 『솔페리노의 회상』의 말미에서 제시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추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위원회였다. 당시에 나온 두 가지 문서를 보면 이 위원회의 회원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면 각자 자신의 길을 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외교회의 이전에 뒤푸르 장군은 이미 동위원회의 총재직에서 사임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1864년 3월 13일 회의에서 뒤푸르 장군을 명예총재에 임명하기로 의결했고, 므와니에가 총재를 맡고 뒤낭이 위원회의 서기를 계속 맡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곧 계속해서 각국 구호단체들과 연락을 취하고 자체가 추구하는 목표의 일반적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점에 수긍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이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면 곧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네바위원회는 1863년과 1864년 회의를 통해 형성된 열정을 이어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했던 대표단에 서한을 보내 1863년 10월의 결의사항에 따라 구호단체를 설립하도록 촉구했고, 각국 정부에 제네바협약 비준을 요청했다.

한편 1863년 10월에 채택된 결의사항의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국의 위원회와 부서들은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을 위해 취할 조치들에 합의하기 위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주도해서 회의소집을 요청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 첫 걸음을 뗀 것은 바로 제네바위원회였다. 1866년 9월 18일 프랑스 부상병구호단체의 회장 프장삭 공작에게 보낸 서한에서, 므와니에는 1867년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만국박람회에 맞춰 각국 중앙위원회들의 모임을 열자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프랑스 적십자사의 주재 하에 1867년 8월 26-31일 파리에



서 제1차 부상병구호단체 국제회의가 열렸고, 므와니에는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회의는 준비가 부족했고 수많은 주제들이 혼란스럽게 논의 되었으나 대부분은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귀스타브 므와니에의 주도하에 제네바위원회는 자체의 구성과 향후 역할에 대한 토의를 제안한 상태였다. 국제회의에서의 발표를 통해 제네바위원회는 당시까지 지속되던 위태로운 상황을 중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네바위원회가 새로운 요건을 충족시키고 영구적 지위를 부여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동의 목적으로 단결했던 모든 국가가 국제위원회에서 대표권 및 정당한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위원회는 이를 대신할 일종의 최고이사를 만들고 군사력을 갖춘 국가당 이사 1명이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국가별 중앙위원회가 선출한 이사들로 최고 결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한 국가별 중앙위원회들은 제네바위원회를 중심으로 집결하고 제네바위원회가 최고의 회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한 논의는 어떤 결론도 맺지 못했다. 프랑스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던 브레다 백작은 국제위원회 본부를 제네바에서 파리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되면 국제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프랑스 당국의 관할 하에 속하게 될 것이었다. 때문에 이 제안은 성공할 수가 없었다. 결국 이 회의에서는 국제위원회 본부를 제네바에 유지하고 그 구성과 직권에 대한 논의는 다음 회의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다음 회의는 1869년 베를린에서 열렸다.

파리회의가 열릴 당시 제네바위원회는 존립의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뒤낭이 알제리에서 경영하고 있던 사업은 솔페리노에서 부상병들의 운명을 목도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전쟁이 발발한 시점에 뒤낭이 이탈리아 북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자금사정 때문이었다.

적십자 창설과 제네바협약 채택 덕분에 ‘몽-제밀라 제분회사’의 사장인 뒤낭은 유명세와 명예를 얻게 되었고 그 자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성공으로 인해 뒤낭은 알제리의 사업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1867년 봄, 뒤낭을 이사로 임명하고 그의 사업체 중 하나를 사들인 ‘제네바 신용금고(Crédit Genevois)’가 파산했다. 손실은 엄청났고 이 사태의 주요 책임은 뒤낭에게 돌아갔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는 몰락하며 신임을 잃어갔다.

파리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1867년 8월 25일자 편지를 통해 뒤낭은 위원회의 서기직에서 사임했다. 위원회는 1867년 9월 6일에 열린 다음 회의에서는 파리에 머무르고 있던 뒤낭이 불참한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 의사록에는 다음과 같이 냉담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다.

“므와니에는 8월 25일 앙리 뒤낭이 파리에서 보낸 편지를 읽었다. 이 편지에서 뒤낭은 위원회 서기직에서 사퇴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기직 사퇴뿐 아니라 위원회의 회원직으로서도 탈퇴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뒤낭은 위원회에서 제명되었다.

적십자 역사가들은 뒤낭에 대한 므와니에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

관해 왔다. ICRC의 총재직에 있던 므와니에가 서기였던 뒤낭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고 이미 절망의 나라에 떨어진 사람에게 상처가 될 말을 한 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뒤낭의 명성은 이미 추락한 상황이었고, ICRC는 서기인 뒤낭에게 닥친 불명예로 인해 적십자 전체가 함께 몰락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뒤낭과의 결별은 어쩌면 불가피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ICRC가 인간미를 발휘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프러시아 구호단체의 초청에 따라 1869년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베를린에서 제2차 국제 부상병구호단체 국제회의가 열렸고, 므와니에가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각국 구호단체가 평시에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다. 각국 적십자사는 부상병에게 원조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평시 상황에서 구호단체의 주요 임무는 전시에 행해야 할 책무에 대비하고 특히 뒤낭이 주창한 ‘열정적 자원봉사자들’의 모집과 훈련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그러나 각국 구호단체는 전시에 투입할 목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각국 구호단체는 평시 활동, 특히 의료진 훈련과 환자 치료, 평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유행병 및 기타 재난과 싸우는 것에 관심을 쏟고 싶어 했다.

설립 주체인 제네바위원회가 방어에 나서 각국 구호단체는 그 설립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바위원회는 평시 활



동이 설립취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새로운 활동에 몰두하게 되면 각국 구호단체가 전쟁터에서 부상병들에게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핵심 사명을 곧 잊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이로 인해 각국 구호단체의 역할을 둘러싼 첫 번째 토론이 벌어졌으나 결국 제네바위원회의 패배로 돌아갔다. 1869년 베를린에서 열린 제2차 국제회의는 결의사항 채택을 통해 각국 적십자사가 지역별 분과를 확장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간호요원들을 훈련시켜 평시 활동, 특히 전염병과 기타 재난을 해결할 방안을 개발하도록 장려했다.

파리회의와 베를린회의에서는 각국 구호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만 토론한 것은 아니다. 제네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 역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1863년 10월에 열린 회의는 '각국 위원회간의 의사소통은 당분간 제네바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일단 각국 위원회가 구성되면 상호간의 직접적 관계를 형성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네바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환상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국가별 위원회간의 연락을 책임지고 조직의 일반적 이해관계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중앙 기구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형태로든 국제위원회는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그렇다면 평시와 전시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일까? 국가별 위원회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어떤 체계를 갖추어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까?



국제위원회는 파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회의에 이러한 문제를 안건으로 제출했다. 동 회의는 이 문제들을 무계획적으로 처리했고, 국제위원회에게 국가별 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연구 하라고 요청했을 뿐이었다.

국제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제안을 바탕으로 베를린회의는 제네바 위원회에 적십자의 기본원칙을 수호 및 보급하고 《국제부상병구호단체 회보》를 발행하며 전시 상황에서 연락국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그 외에 국제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와 관련된 문제들은 1871년 비엔나에서 열릴 차기 회의시까지 연기되었다.

적십자 기본이념의 수호와 보급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국제위원회는 이를 통해 제네바위원회의 중심적 위치를 비롯하여 1863년 10월 회의부터 자연스럽게 맡아온 임무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국제부상병구호단체 회보》의 발행과 출판을 제네바위원회에 위임하려는 결정 덕분에 귀스타브 므와니에는 적십자운동의 업무와 사고방식을 지휘할 소중한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첫 번째 회보는 1869년 10월에 나왔고, 그 후로 1년간 네 차례 출간되었다. 므와니에는 편집자이자 주요 기고자였고, 사실상 거의 30년간 혼자서 그 출판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1898년 10월에 되어서야 위원회는 총재의 업무를 털어주고자 폴테 구트를 서기로 임명했다. 구트는 특히 회보를 비롯하여 《제네바 신문 *Journal de Genève*》에 주기적으로 내보내는 적십자 관련 기사를 맡았다. 그때까지 므와니에는 모든 것을 혼자 담당해온 것이다.



정보국(information bureau)을 설치하려는 계획은 다음 두 가지 사안을 다루기 위함이었다.

- 첫째, 부상자, 포로, 사망자에 대한 정보 전달을 보장한다. 이전에는 적에게 포로로 잡힌 군인들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전무했다. 사망자들은 신원확인 과정도 없이 참호에 버려졌다. 따라서 병사의 가족과 친척들은 자기 혈육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다.
- 둘째, 참전 중인 국가나 중립국 등의 각국 구호단체가 제공하는 구호품을 전달한다.

베를린 회의의 결의사항은 이 두 가지 사안을 다루었다.

“전시에 국제위원회는 적절한 장소에 연락 및 정보사무소를 설치하고,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각국 위원회간의 의사소통과 구호품 전달을 담보해야 한다.”

이 결의사항은 시의 적절했다. 1년 후 프로이센-프랑스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대포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자마자 므와니에는 바젤로 가서 유명인사들을 모아 국제부상병구호협회를 발족하자고 설득에 나섰다. 전쟁이 선포된 지 사흘이 지난 1870년 7월 18일자의 회람장에서 ICRC는 국제부상병구호협회의 설립을 발표했다. 크리스-소상 박사의 열정적인 지휘 하에 협회의 활동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부상병뿐 아니라 전쟁포로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협회는 위탁 받은 구호품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포로수용소까지 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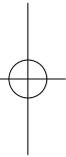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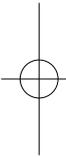
송품을 호위할 대표단을 선정했다. 또한 포로들과 가족 간에 매일 700-800통의 편지를 전달하고 스위스를 통해 2,600명이 넘는 부상 병들을 본국으로 송환했다.

전쟁이 개시되면서 교전국들 간의 외교관계와 우편서비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각국 적십자사뿐만 아니라 교전국 정부들까지도 적국과의 교신을 ICRC에 요청했다. 주로 제네바협약 위반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들이었다.

따라서 중립적인 중재자로서의 ICRC의 역할은 1870년 전쟁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이 전쟁은 제네바협약이 적용되는 첫 번째 무력충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열기가 사그라지자 남은 것은 비난뿐이었다. 특히 프랑스 군대는 제네바협약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고, 프랑스부상병구호협회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전무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제네바협약을 공공연히 비난하면서 모든 책임을 떠넘겼고, 각국이 채택한 군대 규정이 제네바협약을 대체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각국 적십자사 중 일부도 비난에 가세하면서 ICRC는 수세에 몰렸다. 1863년과 1871년 사이에 제네바위원회는 포로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할 국제기구의 창설 등 일련의 대담한 일들에 착수했지만, 프로이센-프랑스전쟁이 끝나자 ICRC, 특히 귀스타브 브와니에는 제네바협약을 비롯하여 당시까지 이룩한 성과를 지켜내는 데 집중하기에도 벅찼다. ICRC는 국제부상병구호협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창설한 시점부터 30년간 이 협회의 수호자 역할을 맡았다.



8. 귀스타브 브와니에 (1878년)

각국 적십자사의 경우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²⁾, 서로를 비난하는 데 혈안이 된 나머지 1871년 비엔나에서 제3차 국제회의를 주최하기로 했던 오스트리아 적십자사는 회의 개최를 무기한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오스트리아 적십자사에 국제회의 개최를 요청하느라 10년을 허비한 ICRC는 직접 제3차 국제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1884년 9월 1-6일에 제네바에서 열렸다.

ICRC가 나서서 회의 제의안, 초대장 발송, 준비를 위한 문서의 초안 작성 등 모든 준비를 하자 자연히 귀스타브 트와니에가 회의 의장을 맡게 되었다.

파리와 베를린에서 열린 전차회의에서는 각국 적십자사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던 반면, 제3차 회의와 1887년 9월 22-27일에 독일 칼스루에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ICRC의 구성과 역할이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그러나 파리회의 및 베를린회의(1867년과 1869년)에서의 ICRC의 입장은 제네바회의(1884년)에서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위원회는

2) "ICRC의 지원을 받는 각국 적십자사들도 본질적으로는 국제기구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이야말로 적십자를 움직이는 정신이다. 이 정신 덕분에 어디에서 전쟁이 벌어지든 구호에 나서고 자국의 부상병들과 마찬가지로 외국군 부상병들에게도 관심을 베푸는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적십자사는 고통 받는 적군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마저도 억압하는 야만적인 애국심을 거부하는 살아 있는 증거이다. 우리 시대의 양심으로 무과할 수 없는 장벽, 즉 광신과 야만성의 토대 위에서 아직도 인류라는 한 가족을 갈라놓으려고 애쓰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려 노력하고 있다."

1870년 7월 귀스타브 트와니에가 이렇게 표현한 낙관적 시각은 곧 발발한 프로이센-프랑스전쟁으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다.



파리회의에서 회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각국 적십자사의 대표들까지 포함하자고 제안했었으나 1870-1871년에 걸친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반대 입장을 취했다. 겨우 전쟁 때문에 적십자사에 충만했던 화합의 정신이 깨질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없었지만, 신생 각국 적십자사들은 보복성 선전전에 나서서 조직을 와해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ICRC는 그러한 교훈을 쉽게 잊지 못하게 된다. 그 후에 발생하는 갈등상황에서도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프로이센-프랑스전쟁은 전시에 교전국 상호간 연락수단으로서 제네바위원회가 수행하는 중립적 중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주었다. 교전국 적십자사간의 연락뿐 아니라 정부 간의 연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적십자사는 ICRC의 구조를 확대하자는 생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제3차 및 제4차 국제회의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제안이 맞서게 된다.

러시아 적십자사의 중앙위원회는 적십자사 재정비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조약에 기반하여 적십자 기관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네바위원회를 각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진정한 국제기구로 변화시키자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되면 제네바위원회가 각국 적십자사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시의 임무는 전쟁터에 중립적인 대표단을 파견하여 교전국들이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시함으로써 제네바협약 위반을 방지하는 것이다.

반면에 ICRC는 자신들이 실무경험을 통해 발전해 왔으므로 기존의 구조와 직권을 유지하기를 요구했다.

므와니에가 제3차 국제회의의 의장을 맡게 되자 귀스타브 아도르가 ICRC의 입장을 대표했다.³⁾ 1887년 칼스루에에서 열린 제4차 국제회의에서 ICRC를 대표한 것도 아도르였다. 조직으로서 ICRC의 입장과 총재의 개인적인 견해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는 필수적이었다. 귀스타브 므와니에가 40여 년간 총재직에 있었지만, 조직과 총재가 의견을 달리한 것은 상당히 예외적이면서도 특이한 상황이었다. 므와니에는 적십자사 연맹이 각국 적십자사의 대표들을 제네바위원회를 중심으로 연합시키는 개념을 고수했으나, ICRC는 1871년부터 독립성을 지키고 프로이센-프랑스전쟁을 통해 중립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기존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졌다. 러시아 적십자사가 제시한 초안에서 위태로워진 것은 ICRC의 구성만이 아니었다. 각국 적십자사가 임무를 개시한 이래 누려왔던 독립성 역시 위기를 맞았다. 바로 이 때문에 러시아측의 제안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칼스루에회의는 현상유지를 확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3) 귀스타브 아도르(1845-1928)는 변호사로 1870년에 ICRC에 조인했다. 1910년에 귀스타브 므와니에의 뒤를 이어 총재로 취임하여 사망할 때까지 그 역할을 수행했다. 자유당에 참여했던 정치이력이 있으며 대의회 의원이 되고 나중에는 제네바 주의회과 연방의회 의원이 된다. 스위스가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던 시점인 1917년에 연방의원에 선출되어 1919년에 스위스 연방 대통령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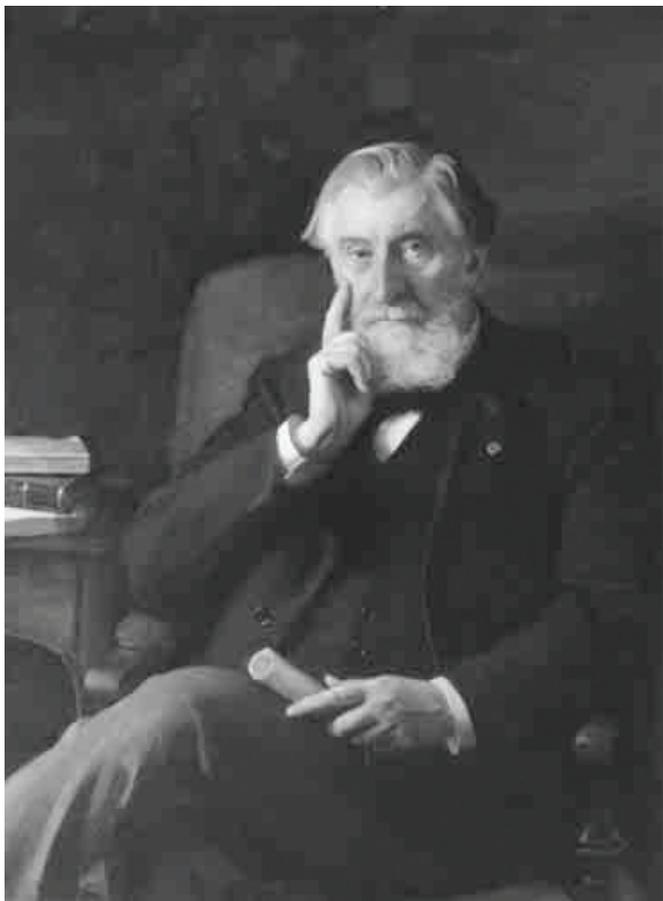
9. 귀스타브 므와니에와 아내 파니, 딸 로르와 아들 아돌프

“적십자사들의 일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본부를 제네바에 그대로 두고 적십자운동이 태동한 이래 지켜왔던 형태를 유지한다. 지금까지 해온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제위원회는,

- a) 각국 중앙위원회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 b) 각국 신규 적십자사의 설립기반을 확인한 후에 그 설립을 공표한다.
- c) 국제부상병구호협회 회보를 발행한다.
- d) 전시에 1개 이상의 국제 정보국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각국 적십자사는 교전국의 부상병들을 위해 현금이나 물자로 구호금품을 발송한다.
- e) 전시에 필요한 경우 국제적십자위원회나 대리인의 중재를 통해 교전국의 적십자사에 서신을 전달한다.”

따라서 창설된 지 20여 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ICRC의 역할이 정의되고 그 체계와 직권을 유지하게 되었다.

제5-7차 국제회의는 각각 1892년 로마, 1897년 비엔나, 1902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렸다. 브와니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각 회의는 그에게 찬사를 보내고 그를 명예의장에 추대했다.



10. 귀스타브 마와니에 (그림: 샤를 지롱)

제네바협약의 개정

40년간 ICRC총재직을 수행하는 동안 귀스타브 므와니에는 제네바협약의 개정 문제에 대해 계속 고민했다. 그는 동협약을 시행한 결과 제기된 문제들을 계속해서 분석했으며, 1864년 협약 중 개선할 사항과 최초 협약을 강화할 추가내용에 관해 연구했다. 그러나 30년이 넘는 그의 활동은 기껏해야 책으로 출간되는 수준의 학문적 연구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으며 결국 ICRC는 각국 정부에 개정 초안을 제출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1864년 제네바협약에 회의가 제기되는 위험을 초래했다.

1898년이 되어서야 ICRC는 귀스타브 므와니에가 작성한 제네바협약 개정안 초안과 함께 동협약 개정에 대한 연구결과를 출판했다.

결국 1899년 네덜란드에서 제1차 헤이그 평화회의가 열리고 나서 ICRC는 1864년에 체결된 제네바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1906년 7월 6일자 제네바협약 개정안이 탄생했다. 귀스타브 므와니에는 개정회의의 작업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결국 수십 년간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프로젝트이자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며 만족할 수 있었다.

1904년 초, 므와니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예전처럼 활발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1904년 3월 14일에 열린 회의에서 ICRC는 1888년부터 부총재를 맡아온 귀스타브 아도르가 앞으로는 총재직함만 없을 뿐 사실상 ICRC의 총재직을 맡도록 결정하고 귀스타브



11. 귀스타브 모와니에 (1906년, 제네바협약 개정을 위한 회의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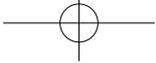
르와니에를 ‘중신 총재’로 선임했다.

그때까지 르와니에는 40년 이상 모든 일을 총괄했고 주요 업무를 모두 수행해 왔다. 그는 국제위원회 각국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했으며 동료들과 토론할 연구 초안을 작성했다. 서신을 받고 답장을 썼으며 회보에 글을 쓰고 도서관의 도서목록을 작성했다. 수많은 저서를 통해 공동목표를 위한 기본원칙을 주창했고 베를린회의에서 ICRC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그러한 기본원칙을 홍보했다. 1864년부터 1904년까지 ICRC의 활동은 총재인 르와니에의 활동과 거의 일치했다.

이렇게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 귀스타브 르와니에는 다른 문제들에도 주도적 노력을 기울였다.

알라바마Alabama호 사건과 국제법학회의 설립

미국 남북전쟁(1861-1865) 중 영국정부는 리버풀의 조선소들이 남부의 주(州)들에 20대 정도의 군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군함은 알라바마호였다. 알라바마호는 2년간 북부 주들의 상선들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침몰했다. 많은 미국인들은 산업화된 북부와 농경중심의 남부가 4년이나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이 남부를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교전 개시시에 영국 내각이 밝힌 중립 선언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영국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문제로 인해 양국의 관계는 진통을 겪었고 악화 일로로 치달았다. 마침내 힘든 협상 끝에 영국과 미국 정부는 이 법률적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동의했다. 중재재판소는 1872년 6월 15-18일 제네바 시청에서 회의를 가졌다. 8년 전 제네바협약의 서명이 이루어진 바로 그 회의실이었다. 재판소는 9월 14일에 판결문을 발표했다. 영국정부는 상당한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약속대로 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했다.

귀스타브 트와니에는 동시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알라바마호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두 강대국이 자신들의 이해와 명예가 걸린 분쟁에서 중재에 따르기로 동의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방법이 아닐까?

그러나 트와니에는 법률 분쟁에 적용할 법과 중재재판소가 적용할 규칙에 합의하기까지 미국과 영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⁴⁾

따라서 만일 중재가 전쟁을 방지하는 수단이 된다면, 19세기 중반까지도 사실상 관습법이던 각국의 법률 내용을 보다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학계가 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서 법의

4) 1870-1871년 사이에 프랑스와 프러시아가 상대방이 전쟁법규와 관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은 두 국가가 무력 충돌시에 적용되는 관습적 규칙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란 점을 트와니에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용과 의미를 규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 국가에서 존경 받는 변호사들이 법률의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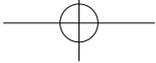
영국이 지불해야 할 배상 금액이 발표되자마자 브와니에는 벨기에 겐트로 가서 「국제법 및 비교법 평론 *Revue de droit international et de législation comparée*」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친구 귀스타브 롤린-자크민스를 만났다. 그리고 독일 하이델베르크로 가서 유명한 스위스 변호사 요한 카스파르 블룬칠리 교수를 만났다.⁵⁾ 그는 영구적인 기관을 설립하여 국제법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을 것을 제안했다.

이 사안은 급속히 진척되었다. 1873년 봄, 롤린-자크민스는 우수한 변호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국제법 아카데미나 학회의 설립을 제안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이 변호사들은 겐트 시청에서 만나 ‘국제법 학회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를 설립했다.

브와니에는 1871년 이후에는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이미 거둔 성과들을 지키는 데 더 많은 열정을 쏟음으로 인하여 적십자의 테두리 내에서 국제법을 발전시키려는 자신의 계획이 방해를 받아 국제법학회라는 새로운 기관의 상황하에서 자신의 창의력을 맘껏

5) 하이델베르크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던 블룬칠리는 그 당시 국제 공법의 전문을 법전초안 형태로 수정한 야심찬 저서를 출간한 상황이었다. (Johann Caspar BLUNTSCHLI, *Das moderne Völkerrecht der zivilisierten Staaten als Rechtsbuch dargestellt*, Nördlingen, Beck, 1868, XII & 520 pages.)



발휘할 수 있었다. 러시아-터키 전쟁(1877-1878) 중에 자행된 전쟁법규와 관습의 위반사항에 대한 주장에 깊은 영향을 받은 므와니에는 1877년 국제법학회에 「전쟁법: 교전국과 언론에 대한 호소」라는 제목의 성명서 초안을 제출했다. 1877년 9월 취리히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제법학회 총회는 이 성명서의 비준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므와니에와 롤린-자크민스에게 군대에 시달할 훈령에 대한 성명서 초안을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국제 협약의 준수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1874년의 브뤼셀선언, 많은 국가가 채택한 군사규정, 미국 남북전쟁 중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선포한 리버훈령(Lieber Code)에 기반하여 전쟁법규와 관습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한 것은 사실상 므와니에였다.

1880년 9월 영국 옥스퍼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제법학회는 귀스타브 므와니에가 작성한 「육전 법규교범 *Manual of the Laws of War on Land*」을 승인했다. 이 교범은 학문적 모임에서 수행한 작업이므로 그 자체로서 국가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이 옥스퍼드 매뉴얼은 육전 법규의 원칙을 기술한 것이었다. 많은 국가들이 이 매뉴얼을 참조하여 자국 군대를 위한 훈령 초안을 작성했다. 또한 1899년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국제평화회의가 채택한 ‘육전의 법규 및 관습에 관한 협약(Convention with Respect to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의 여러 조항에는 므와니에가 제시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피오도르 피오도로비치 마르탱의 제안에 따라 국제법학회 총회는 귀스타브 므와니에에게 감사하는 결

의를 채택했으며, 거기에서 므와니에를 ‘동 매뉴얼의 주요 작성자이자 진정한 집필자’라고 칭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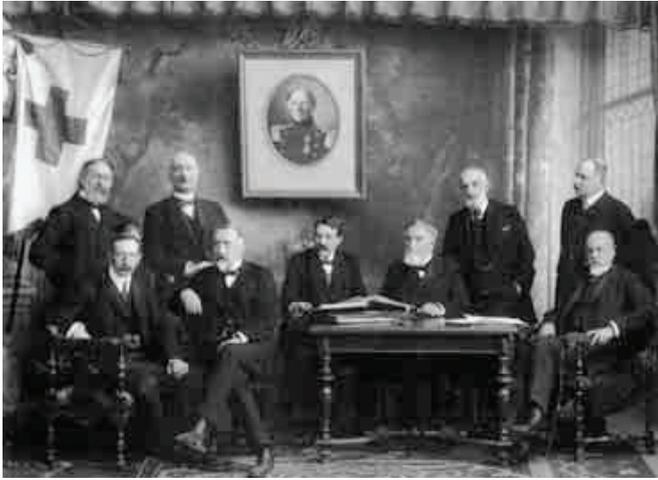
15년이 지난 후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회의(1895년)에서 국제법학회는 귀스타브 므와니에와 에두아르 앵겔하트가 작성한 「제네바협약의 발효에 필요한 처벌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므와니에가 이미 1870-1871년의 프로이센-프랑스전쟁 당시에 제기했던 개념을 수용한 이 보고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주창했다. 따라서 므와니에는 구 유고슬라비아 및 르완다의 문제를 다룬 국제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콩고자유국 총영사

외교수완이 뛰어났던 벨기에 레오폴드 2세는 실익을 쫓는 야심가형 군주로 1830년 벨기에가 독립한 이후 쌓아온 경제적 발전에 걸맞는 식민제국 건설을 꿈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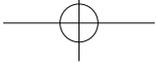
그는 1876년부터 그 당시 미개척지였던 중앙아프리카를 목표로 삼았다. 레오폴드 2세는 9월 12일 아프리카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 아프리카대륙을 탐험하고 식민지화 하려는 노력을 조직적으로 추진할 ‘중앙아프리카 탐험 및 문명화를 위한 국제협회’, 약칭 ‘국제아프리카협회’의 창설계획을 밝혔다.

이듬해 영국인 탐험가 헨리 모턴 스탠리는 콩고강을 따라 인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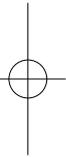
12. 국제적십자위원회 (1900년-1902년)

앞줄 좌측부터 아돌프 므와니에, 데스핀느 박사, 에두아르 오디에, 귀스타브 므와니에, 귀스타브 아도르. 뒷줄 좌측부터 페리에 박사, 에두아르 나빌, 카미유 파브르, 알프레드 고티에. 벽에는 뒤푸르 장군 초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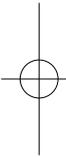
연안에서 대서양 연안까지 아프리카대륙을 횡단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레오폴드 2세는 국제콩고협회를 창설해 협회장직을 맡았다. 그는 스탠리에게 콩고분지를 탐험하게 했으며, 주요 요충지에 국제콩고협회 깃발을 꽂도록 했다. 1882년에는 콩고에 레오폴드빌이라는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었다.

레오폴드 2세는 독일, 영국, 프랑스의 경쟁구도를 교묘하게 활용해, 베를린회의(1885년 2월 23-26일)에서 국제콩고협회의 콩고분지에 대한 통치권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벨기에 영토의 77배에 달하는 식민지를 얻게 되었다. 이후 국제콩고협회의 통치권이 허구로 드러나 효력을 상실하자, 레오폴드 2세는 1885년 5월 29일 콩고자유국(Congo Free State)수립을 선포했다.



베를린회의에서 레오폴드 2세는 국제콩고협회에 아프리카를 ‘문명화시킬 사명’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콩고협회의 통치는 유럽의 독점지배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노예제를 폐지하고 노예제만큼 큰 피해를 입혔던 주류 교역을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애주의라는 구실은 실상 부도덕한 착취를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벨기에정부가 정부나 의회의 통제 없이 군주가 행하는 식민지 과업에 공금을 지원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레오폴드 2세는 국가로부터 재정적 원조를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콩고자유국 자체에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창출하기로 결심했다. 투자금에 대한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레오폴드 2세는 약탈 경제체제의 수립을 허가했다. 이를 통해 유럽의 이주 농장주들이 토지를 확보했고, 식민지와 광산으로 노동력이 징발되었



으며, 강요된 노동을 회피하거나 충분한 수익을 달성하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차별이 가해졌다.

귀스타브 므와니에는 벨기에 레오폴드 왕의 식민지 과업에 조심스럽게 동조했다. 신학교수 L. H. 드 라아르프의 건의에 따라 제네바 지리학회는 1877년 4월 ‘중앙아프리카 탐험 및 문명화를 위한 스위스 국가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를 대표해 앙리 부티에 드 보몽 위원회장과 귀스타브 므와니에가 1877년 6월 브뤼셀에서 열린 제1차 국제아프리카협회 회의에 참석했다. 므와니에는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없어서 토론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협회의 상징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가 문양을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878년 9월 5일, 파리에서 열린 국제법학회 회의에서 므와니에는 다뉴브 강에서처럼 콩고에 자유항해지역을 설치할 국제조약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이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듬해 므와니에는 월간 「아프리카 탐험과 문명화 *L'Afrique explorée et civilisée*」를 발간했다. 국제아프리카협회의 추진상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잡지는 1879년 7월에 첫 호가 출간되었다. 므와니에는 1889년 12월까지 10년에 걸쳐 편집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레오폴드 2세의 식민 과업을 위한 글만을 쓰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1883년 7월 1일 국제법학회 회원에게 발송한 회람장에서 므와니에는 콩고에 자유항해지역을 설치할 계획을 재차 언급했다.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1883년 9월 뮌헨에서 열린 국제법학회 회의에서 자유항해원칙을 콩고강과 그 지류(支流)에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베를린회의는 콩고분지에 대한 국제콩고협회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한편, 콩고강에 자유항해지역을 설치하여 전시에도 철저히 중립 지역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이 자유항해지역은 식민통치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1887년 7월 9일, 브와니에는 일년 전 서신담당관으로 임명된 프랑스 학술원 산하 「정신과학 및 정치학 아카데미」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본 콩고자유국의 설립’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서 그는 레오폴드 2세의 통치를 칭송했고, 콩고자유국의 설립을 박애주의적인 업적으로, 심지어 이전에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인을 대우한 방식에 대한 ‘보상’이라고 묘사했다.

1890년 5월 22일, 레오폴드 2세는 귀스타브 브와니에를 스위스 주재 콩고자유국 총영사로 임명했다. 그 직책 덕분에 브와니에는 공로를 인정받고 사회적 지위를 부여 받는 동시에, 민간단체인 국제적 십자위원회 총재의 지위로는 범접할 수 없었던 외교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

브와니에는 콩고자유국 총영사직을 14년간 수행하다가, 1904년 1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그 후 명예 총영사로 임명되어 사망 시까지 명예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미 이 당시에 레오폴드 2세 정권의 과도한 수탈행위가 영국 소설가 조지프 콘래드에 의해 폭로된 상태였다. 작가이자 항해사인 콘래드는 자신의 소설 『어둠의 심연Heart of Darkness』을 통해 로이 데 벨제호를 타고 콩고를 항해하



13. 말년의 브와니에

면서 목격한 잔학행위를 고발했다.

1908년 10월 레오폴드 체제에 대한 추문을 종식시키기 위해 벨기에 정부가 콩고를 통치하게 되었고, 이후 50년간 벨기에의 식민지로 다스렸다.

귀스타브 르와니에의 전기를 쓰는 작가들은 그가 벨기에 왕의 식민지 과업에 대해 열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을 당혹스럽게 생각한다. 르와니에가 「아프리카 탐험과 문명화」에서 노예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혀 ‘영국 및 해외 노예제반대학회’의 서신담당관으로 임명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분명히 식민지 과업이 내세운 박애주의적인 동기에 이끌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착취 제도의 선전원이 되고 말았다. 레오폴드 2세는 식민통치를 하면서 벨기에에서 행해졌다면 중요심을 불러 일으켰을 잔혹한 형벌을 광범위하게 자행했다.

그러나 르와니에가 콩고 자유항해지역을 자신이 옹호한 국제주의의 진일보로 여겼고, 벨기에의 콩고 식민통치를 통해 콩고가 유럽열강의 각축장이 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전쟁도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그를 변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에 르와니에는 레오폴드 2세가 선언했던 인도주의적인 문명화 목표를 믿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프리카를 문명화시킬 사명’으로 포장한 식민지 과업에 자신의 도덕적인 권위를 내던졌다.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로서 인도주의를 옹호했지만, 결국 이에 반하는 착취와 잔인한 대우를 일삼는 식민지 체제에 동조한 셈이다. 하지만 르와니에가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있

다는 자료는 없다.

아버지와 가장으로서의 모습

우리는 므와니에가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로서, 국제법학회 설립자로서 행한 업적은 잘 알고 있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기가족과 사생활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므와니에 부부에게는 큰 아들 아돌프(1860년생)부터 아드리앙-앙드레(1862년생), 로르(1863년생), 에드메(1864년생), 막내 루이(1870년 생)까지 총 다섯 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러나 그 중 셋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아드리앙-앙드레는 9살에, 에드메는 10살에, 그리고 루이는 출생 직후 사망했다. 므와니에 부부는 자녀들의 죽음으로 크게 상심했다.

또한 므와니에는 장수를 누렸지만, 동료 사회운동가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창립자 중에 뒤낭은 1867년 제명당했고, 모노아 박사는 1869년에 사망했으며, 뒤를 이어 뒤푸르 장군은 1875년에, 므와니에의 오랜 벗이었던 아빠아 박사는 1898년에 그의 곁을 떠났다.

그러나 므와니에 부부는 자녀 둘이 성인이 되어 결혼하는 것을 지켜보는 즐거움을 누렸다. 1883년 같은 해에 아돌프 므와니에는

리디 보나 드 몰렝과 결혼해서 레이날드와 마르셀⁶⁾ 두 자녀를 두었고, 로르는 아드리앙 페이로와 결혼해 에드메, 귀스타브, 모리스, 알리스 네 명의 자녀를 두었다.

노령의 나이와 질병으로 ICRC총재직을 떠난 므와니에는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살았으며 말년에 찍힌 사진에서 므와니에는 루드 라텐느에 있는 자택이나, 세슈롱에 있는 별장 또는 라페지블에서 자녀와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는 자녀를 위해 『내가 걸어온 길 *Aperçu de mes travaux*』이라는 제목으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소책자를 만들어, 자신이 태어난 도시, 조국, 인류를 위해 힘썼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했다.

귀스타브 므와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910년 8월 21일에 세상을 떠났고, 부인 파니 므와니에는 2년 후인 1912년에 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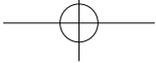
맺음말

귀스타브 므와니에의 삶은 참으로 놀라웠다. 그가 없었다면 적십

6) 귀스타브 므와니에의 손녀 마르셀 므와니에의 이름은 제네바 시민에게 친숙하다. 그녀가 설립한 인형극장 '마리오네트 드 주네브'의 명성이 스위스 밖에서도 자자했고 오늘날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작은 인형극장에서 펼쳐진 매혹적인 공연은 많은 제네바 시민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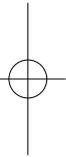


14. 별장 정원에서 귀스타브 므와니에와 손자 레이날드



자나 제네바협약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트와니에는 거의 혼자 힘으로 40여 년 동안 적십자를 대표했으며, 다른 누구보다도 적십자의 발전을 위해 법과 정책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힘썼다. 실제로 제네바협약은 그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또한 그는 국제법학회의 주창자였고 창립회원이었으며, 전쟁의 법규와 관례를 정의하려고 노력했기에 국제형사재판이라는 개념의 선구자라고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은 유럽 각국 정상들은 그의 업적에 찬사를 보내 훈장과 상을 수여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와니에가 자라온 칼빈주의적인 풍토에서는 용인되지 않았겠지만, 그는 당대의 유명인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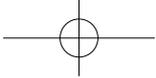
그래서 1901년 앙리 뒤낭이 제1회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트와니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는 아마도 1867년에 파산한 옛 동료 뒤낭이 칭송 받는다는 사실이 불쾌했을 것이다.

뒤낭은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제명된 후 30년간 이리저리 떠돌며 고통 받은 후에야 바라던 대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오늘날 그의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 받고 있다. 반면에 귀스타브 트와니에는 생전에 결단력 있는 업무 추진으로 명성과 영예를 얻었지만, 그의 이름은 사후 곧 잊혀지고 말았다.

그의 운명이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것이 정연하고 꾸준히 발전해 온 그의 지극히 평탄한 삶에 대한 대가인가? 아주 어린 시절 트와니에가 요람에 누워 있을 때부터 곁을 지키던 착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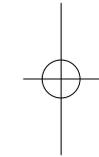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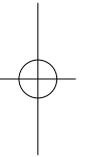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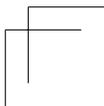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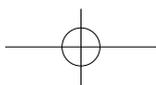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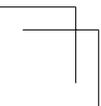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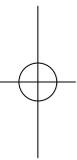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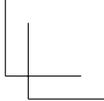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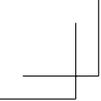
15. 손자 셋과 함께 보트를 탄 귀스타브 르와니에



정들은 그를 한평생 지켜 주었다. 그러나 역사는 극적인 드라마, 잔혹한 사건과 비극만을 기억한다. 이런 의미에서 경중을 따지자면, 솔페리노에서 부상자들과 함께 보낸 사흘간의 경험이, 평생에 걸친 헌신과 끈기있는 노력을 통해 조직을 정비한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구한 세월이 흐른 오늘날 완전히 상반된 성품을 지닌 이들 두 사람이 인류애의 상징인 적십자와 제네바협약이라는 두 자매를 탄생시키고 또 그것들이 후세에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쌓아 올린 업적에 대하여 다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연 표

- 1826년 9월 21일 귀스타브 므와니에, 자크-앙드레 므와니에와 로르 므와니에(결혼 전 성은 데오나)의 아들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생. 므와니에 부부의 외아들.
- 1846년 8-10월 대학이 개강하는 10월까지 하이델베르크에서 여름을 보냄.
- 1846년 10월 6-9일 제네바에서 급진적 혁명이 일어남. 므와니에가 속하는 귀족계급과 상위 중산계급이 권력을 잃게 됨. 생명의 위협을 느낀 자크-앙드레 므와니에는 프랑스 안시를 거쳐 파리에 도착함. 귀스타브 므와니에도 곧 부모를 따라 파리로 건너감.
- 1846-1850년 파리에서 법학을 공부함. 귀스타브 므와니에는 극장 등 파리지역의 문화적 삶의 혜택을 누리며, 파리에 정착한 제네바 출신의 가족들을 방문함. 은행가 바르텔레미 파카르의 딸 파니 파카르를 만남.
- 1847년 11월 4-29일 스위스 통일전쟁 발발. 기욤 뒤푸르 장군이 연방군을 지휘하고 3주 만에 스위스를 분할하며 내전을 마감하여 유럽 열강들의 개입을 피함.
- 1849년 8월 4일 자크-앙드레 므와니에가 제네바 근방 페르네(아인 지방)의 저택 '라 페지블' 을 구입.
- 1850년 3월 1일 귀스타브 므와니에가 파리에서 학부 논문의 구두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음.

- 1850년 7월 2-3일 므와니에가 제네바에서 「로마법에서의 금지 규정」이라는 논문으로 구두시험을 보고 수습 생활 개시를 위한 시험을 치름. 7월 9일 변호사 취임선서를 하고 '구데 & 오데오' 법률회사에서 수습변호사 생활을 시작함.
- 1850년 12월 29일 도제들을 지원하는 부조합회의 회원이 됨. 곧 서기가 되고 후에 회장이 됨.
- 1851년 6월 14일 귀스타브 므와니에와 파니 파카르가 페르네의 개신교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림.
- 1851년 9월 16일 수습생활을 마치지 않고 '구데 & 오데오' 법률회사를 퇴직한 므와니에는 친지의 사업관리인의 법률자문관이 됨.
- 1854년 여름-가을 리옹-제네바 철도회사의 회계사 직책과 화재보험회사의 대표직을 사직함. 1854년 이후로는 보수를 받는 일을 했다는 언급이 없음.
- 1855년 2월 15일 제네바공익협회의 회원이 됨. 자선사업에 전념하기로 결정.
- 1856년 9월 15-20일 제네바공익협회의 대표로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복지회의에 참석.
- 1857년 12월 10일 31세의 나이에 제네바공익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됨.
- 1858년 므와니에가 편집한 《제네바공익협회 회보》 1호 발행.
- 1859년 6월 24일 슬페리노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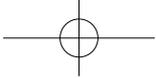
- 1860년 9월 26일 귀스타브와 파니 므와니에의 장남 아돌프 므와니에 출생.
- 1862년 11월 앙리 뒤낭의 저서 『솔페리노의 회상』이 출간됨. 뒤낭이 귀스타브 므와니에에게 저서를 보냄.
- 1862년 12월 귀스타브 므와니에가 뒤낭과 연락을 취함.
- 1863년 2월 9일 므와니에가 뒤낭의 결론을 제네바공익협회에 제시하여 같은 해 9월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복지회의에 제출할 발표문을 준비하려 함. 이를 위해 협회는 뒤낭, 므와니에, 뒤푸르 장군, 루이 아빠야, 데오도르 모노와르 등 5인의 초안작성위원회를 구성함. 이 위원회가 ICRC의 출발이 됨.
- 1863년 2월 17일 일명 '5인위원회'의 창립회의가 열림. 5인위원회는 영구적인 국제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뒤푸르 장군을 회장에 선임함.
- 1863년 9월 1일 위원회는 1863년 10월 26-28일 제네바에서 열릴 국제회의의 초대장을 발송함.
- 1863년 9월 뒤낭이 베를린으로 가서 세계통계대회에 참여함. 동회의 4부에서 민간인과 군인의 건강 및 사망률에 대한 비교통계학을 다룸.
- 1863년 9월 14일 귀스타브와 파니 므와니에의 장녀 로르 므와니에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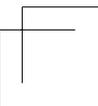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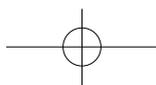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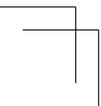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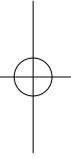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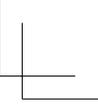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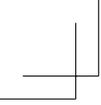
- 1863년 9월 15일 세계통계대회의 지원에 힘입어 뒤낭은 1863년 9월 1일자 회람장을 보완하고 군대 보건 서비스를 위한 중립적 지위 개념을 포함하여 회의의 목적을 확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회람장을 보냄.
- 1863년 10월 1일 스위스통계협회 창설. 므와니에가 회장으로 선출됨.
- 1863년 10월 26-29일 1863년 10월의 창립회의 개최. 뒤푸르 장군의 인사말에 이어 므와니에가 위원회의 제안을 발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을 맡음. 이 회의에서 적십자의 근간을 구성하게 될 10개의 결의사항, 그리고 각국 정부에 보내는 3개의 권고사항을 채택함.
- 1864년 3월 13일 므와니에가 ICRC의 총재에 선출됨. 뒤푸르 장군이 명예총재를 맡고 뒤낭은 서기직을 유지함.
- 1864년 8월 8-22일 외교회의가 열림. 뒤푸르 장군, 레만 박사, 귀스타브 므와니에가 스위스 전권대표로 참석. 뒤푸르 장군이 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되고, 므와니에를 필두로 제네바위원회가 작성한 협약 초안에 기반하여 심의가 이루어짐. 1864년 8월 22일자 최초 제네바협약에 조인.
- 1867년 2월 25일 ‘제네바 신용금고’ 파산. 뒤낭은 이 은행의 이사 중 한 명이었음.
- 1867년 4월 귀스타브 므와니에와 루이 아빠아가 쓴 『전쟁과 자선사업』 출간.

- 1867년 8월 26-31일 제1차 부상병구호단체 회의가 파리에서 열림. 므와니에가 부의장으로 선출됨. 프랑스 중앙위원회의 대표인 브레다 백작이 시작한 공격에 맞서 제네바위원회의 입장을 변호함.
- 1867년 9월 6일 위원회 회의가 열림(당시 파리에 있던 앙리 뒤낭은 불참). 뒤낭이 위원회에서 제명됨.
- 1868년 1월 므와니에가 파리 평화연맹의 창립회원이 됨.
- 1869년 4월 22-27일 부상병구호단체 제2차 회의가 베를린에서 열림. 므와니에가 부의장으로 선출됨.
- 1869년 10월 《국제부상병구호단체 회보》 1호 발행. 이 회보는 연간 4회 발행됨. 므와니에가 책임편집인을 맡음.
- 1870년 7월 15일 프랑스가 프러시아와의 전쟁을 선포함.
- 1870년 7월 18일, 22일 1870년 7월 18일과 22일자의 회람장에서 ICRC는 부상병 구호를 위한 국제기구의 창설을 발표함.
- 1870년 11월 22일 바젤에서 국제전쟁포로구호위원회를 창설하고 녹색자 표장the emblem of the green cross을 사용함.
- 1870년 12월 13일 귀스타브 므와니에의 조카 귀스타브 아도르가 ICRC의 회원으로 선출됨. 아도르는 1871년 서기에 이어 1888년에 부총재에 임명됨.
- 1872년 3월 16일 각국 중앙위원회에 보낸 회람장에서 므와니에는 네덜란드 적십자사처럼 구호단체들에게 정식 명칭을 부여할 것을 제안.

1872년 9월 14일	알라바마호 중재재판소가 판결을 내림.
1872년 11월	므와니에가 국제법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을 영구적 기관을 창설하자고 제안.
1873년 9월 8-10	일겐트에 모인 국제법학회 창립회원들이 기관의 규정을 채택함.
1876년 9월 12일	레오폴드 국왕 2세가 브뤼셀에서 아프리카 전문가들의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 탐험 및 문명화를 위한 국제협회'를 위한 계획을 발표함.
1877년 4월 23-24일	제네바지리학협회가 '중앙아프리카 탐험 및 문명화를 위한 스위스 국가위원회'를 설립함.
1877년 6월 18-23일	국제아프리카협회가 브뤼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함. 므와니에가 중앙아프리카 탐험 및 문명화를 위한 스위스 국가위원회의 대표로 참석함.
1877년	헨리 스탠리가 인도양에서 아프리카를 가로질러 대서양까지 콩고강 줄기를 따라 여행함.
1879년 7월 5일	《아프리카 탐험과 문명화》 1호 발행. 므와니에가 10년간 출판인을 담당함.
1880년 9월 6-10일	옥스포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제법학회가 귀스타브 므와니에가 쓴 「육전 법규 매뉴얼」 채택.
1882년 6월	므와니에가 『적십자사의 과거와 미래』를 출간.

- 1887년 9월 22-27일 칼스루에에서 제4차 국제적십자회의가 열림. 므와니에가 명예의장에 선임됨. 이 회의에서 마침내 ICRC의 권한과 부속직권이 결의됨.
- 1889년 12월 귀스타브 므와니에가 《아프리카 탐험과 문명화》 잡지의 운영을 양도함.
- 1890년 5월 22일 레오폴드 2세가 귀스타브 므와니에를 스위스 주재 콩고자유국 총영사로 임명함.
- 1895년 1월 귀스타브 므와니에와 에두아르 앵겔하트가 작성한, 「제네바협약 발효에 필요한 처벌 조치에 대한 국제법학회 제6차 위원회 보고서」 발간.
- 1898년 6월 23일 귀스타브 므와니에의 「제네바협약 개정 연구」 발표.
- 1898년 10월 11일 귀스타브 므와니에를 돕기 위해 ICRC가 폴테 구트를 서기로 임명하여 회보를 중점적으로 책임지게 함. 당시까지 므와니에가 거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해옴.
- 1901년 12월 10일 앙리 뒤낭과 프레데리크 파시가 제1회 노벨 평화상 수상.
- 1902년 3월 18일 귀스타브 므와니에가 프랑스 학술원 정신과 학정치학 아카데미의 외국인 준회원으로 선출됨.
- 1904년 1월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귀스타브 므와니에가 스위스 주재 콩고자유국 총영사직에서 사퇴함. 사망 시까지 명예 총영사직을 맡음.

- 
- 
- 
- 1904년 3월 14일 귀스타브 아도르가 사실상 ICRC의 총재를 맡음. 므와니에는 '총신 총재' 직에 선임됨.
- 1906년 6월 11일-7월 6일 제네바협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므와니에가 명예위원장에 선출됨.
- 1910년 8월 21일 귀스타브 므와니에 사망.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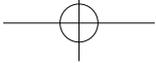
* 출간도서 출처

Compte rendu de la Conférence internationale réunie à Genève les 26, 27, 28 et 29 octobre 1863 pour étudier les moyens de pourvoir à l'insuffisance du service sanitaire dans les armées en campagne (제네바공의협회 회보 24호에서 발췌), Geneva, Imprimerie Jules-Guillaume Fick, 1863, p.150.

Compte rendu de la Conférence internationale pour la Neutralisation du Service de Santé militaire en Campagne, réunie à Genève du 8 au 22 août 1864, 국제적십자위원회 도서관 소장 육필본, DE MARTENS에서 재출간, Nouveau Recueil général de Traités, vol. XX, pp. 375-399와 Revue internationale de la Croix-Rouge (RICR), No.425, 1954년 5월, pp. 416-423; No.426, 1954년 6월호, pp.483-498; No.427, 1954년 7월호, pp.573-586.

Conférences internationales des Sociétés de Secours aux Blessés militaires des Armées de Terre et de Mer, tenues à Paris en 1867, 개정판, Paris, Commission générale des Délégués and Imprimerie Baillière & Fils, 1867, p.286와 p.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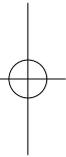
Compte rendu des Travaux de la Conférence internationale tenue 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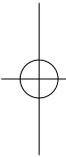
Berlin du 22 au 27 avril 1869 par les Délégués des Gouvernements signataires de la Convention de Genève et des Sociétés et Associations de Secours aux Militaires blessés et malades, Berlin, Imprimerie J.-F. Starcke, 1869, p.488.

“Les Sociétés de secours pendant la guerre de 1870”, Bulletin international des Sociétés de Secours aux Militaires blessés, No.5, 1870년 10월호, pp.1-13.

Rapports de l'Agence internationale de Secours aux Militaires blessés, Geneva, Imprimerie Soullier & Wirth, 1870-1871, p.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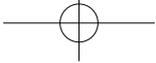
Rapport du Comité international de Bâle pour les secours aux prisonniers de guerre (1870-1871), Basel, Imprimerie G.A. Bonfantini, 1871, p.113와 부록.



Actes du Comité international de Secours aux Militaires blessés, Geneva, Imprimerie Soullier & Wirth, 1871, p.260. “Les destinées de la Convention de Genève pendant la guerre de Serbie”, Bulletin international, No.28, October 1876, pp.164-176.

Le Comité international de la Croix-Rouge de 1863 à 1884, Geneva, Imprimerie Soullier, 1884, 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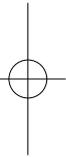
Troisième Conférence internationale des Sociétés de la Croix-Rouge tenue à Genève du 1er au 6 septembre 1884, Compte rendu, Geneva, ICRC, 1885, p.19와 p.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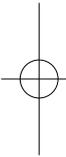
Du rôle du Comité international et des relations des Comités centraux de la Croix-Rouge: Rapport présenté par le Comité international à la Conférence internationale des Sociétés de la Croix-Rouge à Carlsruhe en 1887, Geneva, ICRC, 1887, p.24.

Quatrième Conférence internationale des Sociétés de la Croix-Rouge tenue à Carlsruhe du 22 au 27 septembre 1887, Compte rendu, Berlin, Central Committee of the German Associations of the Red Cross, 1887, p.52와 p.154.

Le Comité international de la Croix-Rouge de 1884 à 1892, Geneva, ICRC, 1892, p.28.



“La part du Comité international de la Croix-Rouge dans l’histoire de la Convention de Genève”, Bulletin international, No.123, 1900년 7월호, pp.136-147; No.124, 1900년 10월호, pp.208-225.



Le Comité international de la Croix-Rouge de 1892 à 1902, Geneva, ICRC, 1902, p.24.

Procès-verbaux des séances du Comité international de la Croix-Rouge, 17 février 1863-28 août 1914, Jean-François PITTELOUD 외 Caroline BARNES와 Françoise DUBOSSON 공동 편집, Geneva, ICRC and Henry Dunant Society, 1999, p.858.

* 귀스타브 므와니에의 주요 저술

귀스타브 므와니에, 『Notions générales sur les interdits en droit romain』, 논문, Geneva, Imprimerie Jules-Guillaume Fick, 1850, p.44.

귀스타브 므와니에, 『Biographie biblique de l'Apôtre Paul』, Lausanne, George Bridel, 1859, p.127.

귀스타브 므와니에와 루이 아빠아, John Furley 번역 『병자와 부상자 구호 (Help for Sick & Wounded)』, London, John Camden Otten, 1870, p.468 (붙여 원서: La guerre et la charité, Traité théorique et pratique de philanthropie appliquée aux armées en campagne, Geneva and Paris, Librairie Cherbuliez, 1867, p.402).

귀스타브 므와니에, 『La neutralité des militaires blessés et du service de santé des armées』, Saint-Germain, Imprimerie L. Toinon & Cie, April 1867, p.120.

귀스타브 므와니에, Étude sur la Convention de Genève, Paris, Joël Cherbuliez, 1870, p. 376.

귀스타브 므와니에, 『Note sur la création d'une institution judiciaire internationale propre à prévenir et à réprimer les infractions à la Convention de Genève』, Bulletin international des Sociétés de la Croix-Rouge, No.11, 1872년 4월호, pp.122-131 (재

판: Geneva, Imprimerie Soullier & Wirth, 1872,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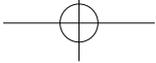
귀스타브 브와니에, 『La Convention de Genève pendant la guerre franco-allemande』, Genève, Imprimerie Soullier & Wirth, 1873, p.59 (Bulletin international에서 발췌인쇄, No.14, 1873년 1월호, pp. 51-70; No. 15, 1873 4월호, pp.104-137).

귀스타브 브와니에, 『Les dix premières années de la Croix-Rouge』, Bulletin international, No.16, 1873년 7월호, pp.165-243.

귀스타브 브와니에, 『Ce que c'est que la Croix-Rouge』, Bulletin international, No.21, January 1875, pp.1-8 (발췌인쇄, Geneva, Imprimerie B. Soullier, 1874, p.23).

귀스타브 브와니에, Congrès international. Hygiène-Sauvetage Économie sociale, Rapport sur la 7e question de la 2e section: “De la fédération des Sociétés de secours aux militaires blessés”, s.l.n.d, [1876]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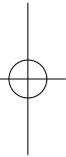
“지상전 법규 매뉴얼, 국제법학회 간행 (The Laws of war on Land, Manual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무력충돌의 법규: 협약, 결의안과 그 밖의 문서 모음집 (The Laws of Armed Conflicts: A Collection of Conventions, Resolutions and Other Documents), Dietrich SCHINDLER와 Jirí TOMAN 편집, 4차 개정판, Leiden & 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4, pp.29-40 (불어 원문: “Manuel des lois de la guerre s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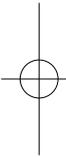
terre”), 1880년 9월9일 국제법학회 채택 (Oxfordsession),
Annuaire de l’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vol.5 (1881-1882),
pp.156-74.

귀스타브 므와니에, 『적십자사의 과거와 미래 (The Red Cross,
its Past and its Future)』, John Furley 번역, Cassel, London, Peter,
Galpin & Co, 1883, p. 190 pages (불어 원서: La Croix-Rouge,
Son Passé et son Avenir, Paris, Sandoz et Thuillier, 1882, p.288).

귀스타브 므와니에, 『La question du Congo devant l’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Annuaire de l’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tome VII, 1883, pp.250-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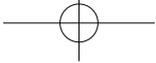


귀스타브 므와니에, 『De quelques faits récents relatifs à la
Convention de Genève』, Revue de Droit international et de
Législation comparée, tome XVIII, 1886, pp.545-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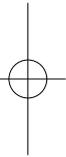
귀스타브 므와니에, “법률적 관점에서 본 콩고자유국의 설립
(La fondation de l’État indépendant du Congo au point de vue
juridique)”, Séances et Travaux de l’Académie des sciences morales
et politiques de l’Institut de France, tome CXXVIII, 1887,
pp.460-497.

귀스타브 므와니에, 『적십자 성공의 요인 (Les causes du succès
de la Croix-Rouge)』, Paris, Alphonse Picard, 1888, p.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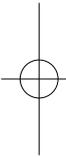


귀스타브 므와니에, 『Considérations sur la sanction pénale à donner à la Convention de Genève』, Lausanne, ImprimerieF. Regamey, 1893, p.33.

귀스타브 므와니에, et Édouard ENGELHARDT, “De la sanction pénale à donner à la Convention de Genève”, Rapport de MM. G.MOYNIER et Éd. ENGELHARDT, Annuaire de l’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vol.XIV, 1895, Cambridge session, pp.17-31.



귀스타브 므와니에, Essais sur les caractères généraux des lois de la guerre, Geneva, Ch.Eggimann, 1896, p.123 (Séances et Travaux de l’Académie des sciences morales et politiques de l’Institut de France, tome CXLIV, pp.667-697 et 828-849).



귀스타브 므와니에, Notions essentielles sur la Croix-Rouge, Geneva, Georg, 1896, p.53.

귀스타브 므와니에, 『제네바협약 개정 연구, 개정안에 따른 역사적·비판적 연구 (La révision de la Convention de Genève. Étude historique et critique suivie d’un projet de Convention révisée)』, Geneva, ICRC, 1898, p.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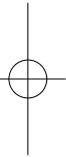
귀스타브 므와니에, La Convention de Genève au point de vue religieux, Dole, Typ. L.Bernin, s.d., 10 pages (Revue Chrétienne에서 발췌 인쇄, 1899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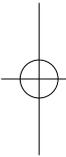
귀스타브 므와니에, *La part du Comité international de la Croix-Rouge dans l'histoire de la Convention de Genève*, Geneva, Imprimerie Soullier, 1900, p.40.

귀스타브 므와니에, 『적십자 협회 국제회의 (Les Conférences internationales des Sociétés de la Croix-Rouge)』, Geneva, Imprimerie Soullier, 1901, p.73.

귀스타브 므와니에, 『적십자 창립 (La fondation de la Croix-Rouge)』, Geneva, Imprimerie Soullier, 1903, p.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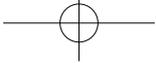
귀스타브 므와니에, *Rappel succinct de l'activité déployée par le Comité international de la Croix-Rouge à Genève pendant les quarante premières années de son existence (1863 à 1904) présenté à ce comité le 17 octobre 1904*, Geneva, ICRC, 1905, p.126.



귀스타브 므와니에, *Mes heures de travail*, Geneva, Société générale d'imprimerie, 1907, p.93.

귀스타브 므와니에, 『내가 걸어온 길 (Aperçu de mes travaux)』, 1850-1902, 육필, 1903, p.119.

귀스타브 므와니에, *Catalogue du petit musée de Champel inauguré le 7 mars 1909 et faisant connaître les encouragements que la Croix-Rouge a reçus en la personne du premier Prési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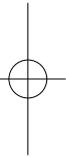


de son Comité international de 1863 à 1909, Geneva, Imprimerie Soullier, 1909, 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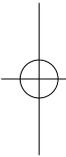
* 귀스타브 므와니에와 적십자 역사에 관한 책과 글

Pierre BOISSIER,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From Solferino to Tsushima』, Geneva, 앙리 뒤낭 연구소, 1985, p.391 (1963년 불어 초판).

Bernard BOUVIER, Gustave Moynier, Geneva, Imprimerie du Journal de Genève, 1918, p.60.



Jean DE SENARCLENS, 『The Founding of the Red Cross: Gustave Moynier, its Master Builder』, Geneva, Éditions Slatkine, 2006, p.360.



André DURAND, « Quelques remarques sur l'élaboration des principes de la Croix-Rouge chez Gustave Moynier », 『Studies and Essays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Red Cross Principles in Honour of Jean Pictet』, Christophe SWINARSKI 편집, Geneva, ICRC, and The Hagu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4, pp.861-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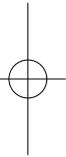
André DURAND, “The role of Gustave Moynier in the founding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1873), “The W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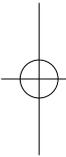
in the Balkans” (1875–1878), “The Manual of the Laws of War” (1880),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No.303, 1994년 11월–12월호, pp.542–563.

André DURAND, “Gustave Moynier and the peace societies”,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No.314, 1996년 9월–10월호, pp.532–550.

André DURAND, “Le premier Prix Nobel de la Paix (1901): Candidatures d’Henry Dunant, de Gustave Moynier et du Comité international de la Croix-Rouge”, *Revue internationale de la Croix-Rouge*, No.842, June 2001, pp.275–285.



André DURAND, Gustave Moynier, March 1999. 국제적십자 위원회 기록본 소장 육필본.



Alexis FRANÇOIS, *Le Berceau de la Croix-Rouge*, Geneva, Librairie Jullien, and Paris, Librairie Édouard Champion, 1918, p.336.

Véronique HAROUEL, “Aux origines de la justice pénale internationale: la pensée de Moynier”, *Revue historique de droit français et étranger*, 77th year, No.1, 1999년 1월–3월호, pp.71–83.

Véronique HAROUEL, *Genève–Paris, 1863–1918: Le droit*

humanitaire en construction, Geneva, 앙리 뒤낭 협회, ICRC, French Red Cross, 2003, p.819.

C.LUEDER, La Convention de Genève au point de vue historique, critique et dogmatique,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독어에서 번역, Erlangen, Édouard Besold, 1876, p.414.

* 사진 출처

- 브와니에 가족: 4, 8, 9번 (촬영 · 프레데릭 브와소나), 5번 (촬영 · A. 데트라), 14번 (촬영 · 아돌프 브와니에), 15번 (촬영 · 아돌프 브와니에)
- 국제적십자위원회 기록 보관소: 6번 (촬영 · 프레데릭 브와소나), 7, 11, 12, 13번 (촬영 · 프레데릭 브와소나)

- 초판발행 2011년 12월 20일
- 발행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 편집 및 디자인 에이치크리에이티브